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675-01



# 2024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침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Cont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I** 사업개요 **1**

CHAPTER

- 1. 추진배경 3
- 2. 시범사업 연혁 4
- 3. 시범사업 개요 5

## **II** 추진체계 및 역할 **9**

CHAPTER

-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체계(안) 11
- 2. 수행체계의 주체별 역할(안) 12

## **III** 세부 사업내용 **15**

CHAPTER

- 1.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17
- 2. 예방 및 관리 서비스 24

## IV

### 주요 연계 가능 서비스

41

CHAPTER

〈 주요 서비스 개요 〉	43
가. 문화로 사회연대 <small>문화부</small>	44
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small>복지부</small>	46
다. 청년마음건강센터 <small>복지부</small>	49
라. 청년도전지원사업 <small>고용부</small>	51
마.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small>고용부</small>	53
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small>복지부</small>	57
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small>복지부</small>	59
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small>고용부</small>	63
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small>복지부</small>	65
차. 노인맞춤돌봄사업 <small>복지부</small>	67
카.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small>복지부</small>	69
타. 통합사례관리사업 <small>복지부</small>	71
파. 온가족보듬사업 <small>여가부</small>	73

## V

### 시범사업 관리 및 행정사항

75

CHAPTER

1. 예산 편성 집행 관리	77
2. 시범사업 평가	79
3. 행정사항 및 기타	92

# Cont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VI

### 참고자료

97

CHAPTER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99
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11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I

chapter

##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시범사업 연혁
3. 시범사업 개요



# 1

## 추진배경



### ■ 현황

- 1인 가구 증가('16년 540만 가구 → '22년 750만 가구)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 \* 사회 배제(도움 거부) 중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고립집단이 13.7%(보건복지포럼 22.4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독거노인 등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 및 복지위기 가구의 고독사 추정사례\* 지속 발생
  - \* 북한이탈주민 모자('19), 창신동 모자('22), 영도구 고독사('22) 등
- 그 간 저소득 청년, 독거노인 지원정책 등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추진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연계 부족

### ■ 개선 방향

-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 및 관리의 구체적인 체계 마련
- 생애주기(청년, 중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표준 매뉴얼) 제시
-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우수사례 공유 등

## 2

## 시범사업 연혁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3) 및 시행('21.4.)
- 전국 지자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추진현황 파악('21.2.~6.)
- 고독사 예방사업 소관부서 변경(자살예방정책과 → 지역복지과, '22.2.)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현장 의견수렴 시·도 간담회 개최('22.5.)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2.6.)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22.6.) 및 참여 지자체(9개 시·도, 39개 시군구) 선정('22.7)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개시('22.8.~)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원체계 운영  
(지자체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22.8.~)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4년 예산 확정('23.12.)
- 전국 229개 시군구 시행 예정('24.7월~)



## 3

## 시범사업 개요



MINISTRY OF HEALTH &amp; WELFARE

## 가 고독사 정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①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③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사망 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 연령상관없이 가족·친척·직장동료·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되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태
  - (사망 시) “임종을 맞고”
    - 의료기관이 아닌 거주지에서, 범죄행위를 제외한 자살·병사·사고사 등으로 아무런 보살핌 없이 사망
  - (사망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
    - 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일정 시간\* 방치된 후 발견
- \* 현재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24.1.9, 공포시 별도 안내)

〈참고〉 고독사예방법 개정 동향(고영인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23207호)

- (주요내용)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의 발견 시점을 삭제하여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고독사 정책의 혼선 발생을 방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 (진행상황) 상임위 상정(‘23.9.18) → 법사위 상정(‘23.11.23) → 본회의 통과(‘24.1.9)

## 나 사업 추진방향

- (목표)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방향)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

## 다 추진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추진원칙

-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밀착형 고독사 지원체계 구축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하되, 사회적 연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 AI, IoT 등 정보기술 활용 및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로 효율성 제고

## 라 사업기간

- (기존 참여 지자체) '24.1월 ~ 12월(1년)
- (신규 참여 지자체) '24.7월 ~ 12월(6개월)

## 마 참여 지자체

- (기존 참여 지자체) 9개 시·도, 39개 시군구

구분	광역	기초	구분	광역	기초
1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6	경기	성남시
2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7	울산	중구, 남구
3	대구	달서구, 서구, 수성구	8	경북	구미시, 문경시
4	충북	진천군, 옥천군	9	전북	전주시
5	강원	춘천시, 강릉시			

- (신규 참여 지자체) 그 외 8개 시·도, 190개 시군구

## 바 사업예산

- (보조사업명) 고독사 위험자 지원(지자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지원)
- (보조구분)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 (사업규모) 17개 시·도에 총 23.31억 원(지방비 포함시 46.62억 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총계	국비(50%)	지방비(50%)	
			광역(30%)	기초(20%)
사업규모	4,662	2,331	1,399	932

## 사 사업대상: 고독사위험자, 고독사한 사람

### ① 고독사위험자

- 아래 고려대상 포함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고독사 위험자로 선별 및 관리되는 사람

\* 표준 판단도구(보건복지부에서 '24년 상반기 중 제작·배포 예정), 자체 기준 또는 타 지자체(서울, 부산 등) 판단도구 등 활용

#### - 고려 대상 -

- ▶ 지자체별 인구 구성(청년, 중·장년, 노인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기존 생애주기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우선 고려
  - \*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등
- ▶ 위기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다인 가구(노인 돌봄 가구, 장애인 돌봄 가구 등)도 사업대상에 포함

### ② 고독사한 사람(이하 고독사 사망자)

- 사후관리 지원에 한함

# II

chapter

## 추진체계 및 역할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체계(안)
2. 수행체계의 주체별 역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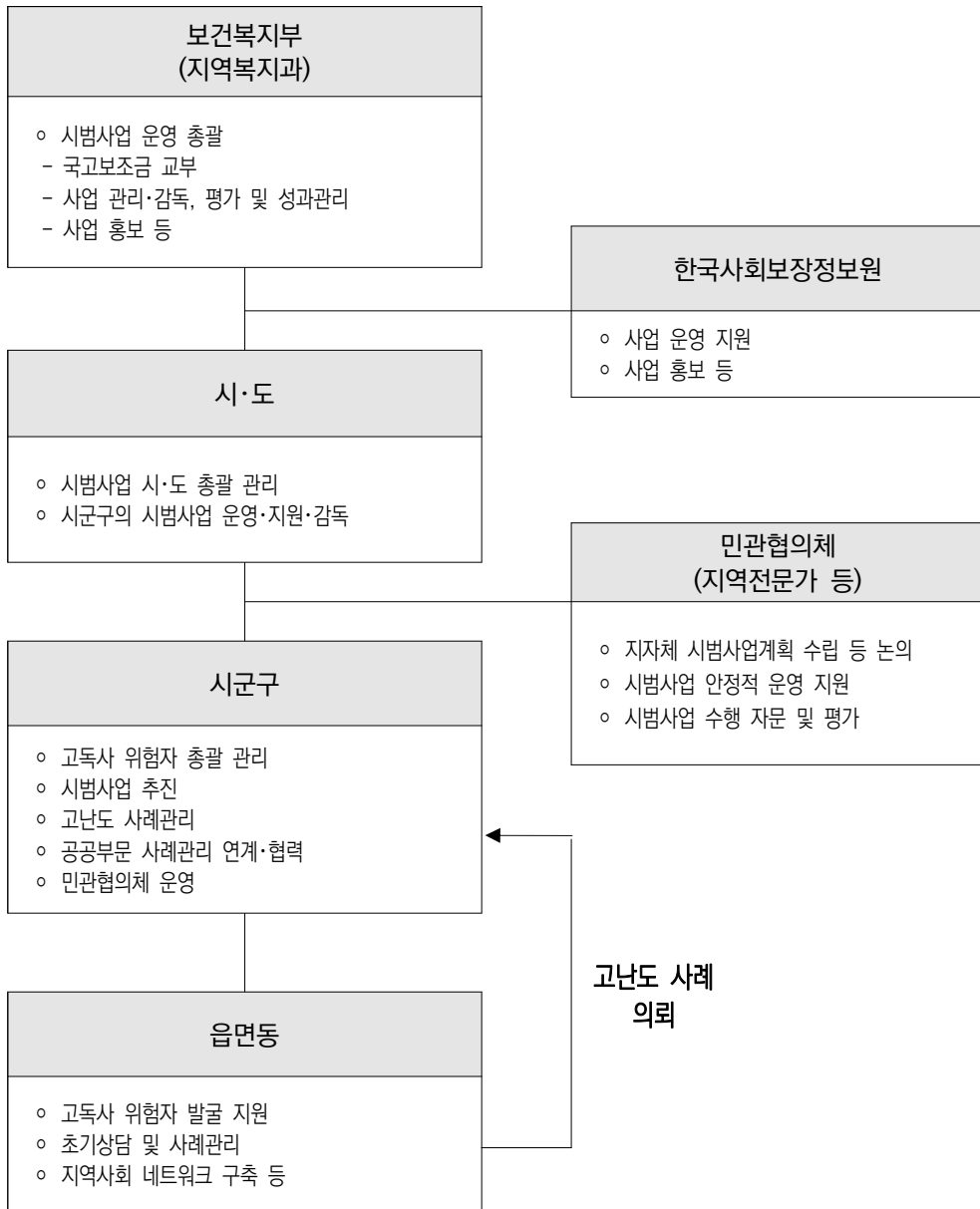


# 1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체계(안)



※ 아래는 예시일 뿐으로,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2

## 수행체계의 주체별 역할(안)



※ 아래는 예시일 뿐으로,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구분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지침 발달</li> <li>▶ 시범사업 관리·감독, 평가 및 성과관리</li> <li>▶ 국고보조금 교부, 지자체 시범사업 운영 지원(컨설팅, 모니터링, 홍보 등)</li> </ul>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시·도 총괄, 평가 및 성과관리</li> <li>▶ 시군구 운영·관리에 대한 기획·조정·지원계획 수립</li> <l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li> <li>▶ 지방보조금 교부 및 시군구별 사업예산 조정·배분</li> <li>▶ 시범사업 홍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지원 및 관리·감독</li>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실시(중앙부처 협조)</li> </ul> <p>※ 광역 단위 서비스 모형 기획 및 시군구 보급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발굴 지원체계 구축 지원</li>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발굴 지원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실시(중앙부처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지원 및 관리·감독</li>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실시(중앙부처 협조)</li> </ul> <p>※ 광역 단위 서비스 모형 기획 및 시군구 보급 가능</p>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 및 인력 배치</li> <li>▶ 시범사업 기획·운영·관리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li> <li>▶ 고독사 의심사례 발생 등 동향 파악 협조</li> <li>▶ 지방비(시군구 부담분) 확보 및 예산집행</li> <li>▶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자원관리</li> <li>▶ 지역 전문가 등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원 기반 확대</li> <l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li> <li>▶ 고독사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li> <li>▶ 사업 홍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총괄 관리</li> <li>▶ 고난도 사례관리</li> <li>▶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사업 추진</li> <li>▶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대상 검토 및 선정(직권선정 포함)</li> <li>▶ 지역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적용(광역 개발 모형의 적용 포함)</li> </ul>



구분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축·운영</li> <li>▶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대상 신청</li>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사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위험자 발굴 지원</li> <li>▶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li> <li>▶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민관협의체</b></p> <p><small>*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용 또는 신설</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의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등 주요사항 논의</li> <li>- 지역 내 관련 서비스 확충을 위한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li> <li>-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li> </ul> </li> <li>▶ (시범사업 자문 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 정도가 높은 사람 또는 고독사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기획조사를 통한 신규 자원 발굴·기획 단계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단위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원정보 공유</li> <li>- 시범사업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운영 개선방안 도출</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사회보장정보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등 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li> <li>▶ 사업현황 모니터링, 연구개발, 통계 생산·분석 등</li> <li>▶ 고독사 의심사례 발생 등 동향 파악</li> <li>▶ 사업 홍보지원 등</li> </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III

chapter

## 세부 사업내용

1.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2. 예방 및 관리 서비스



# 1

##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 가 고독사 위험자 발굴

####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조사 실시

- (발굴시스템)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 구축(‘15.12~)
  - (운영방식)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5~) → 명단 조사 중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어 판단도구로 최종 판정 되면 고독사 시범사업 담당부서에서 관리
    - ※ 회차별(2개월 주기) 고위험군 약 20만 명(상위 4%)을 지자체에서 조사
  - (정보입수)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44종의 정보를 입수, 총 건수는 회차별 약 500만 명 수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은 기본적으로 실시
  - 향후, 고독사 위험자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고독사 위험자 위기정보 및 발굴 모형 개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예정(‘26~)
- (기획조사) 관내 고독사 위험 정도가 높은 사람 또는 고독사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기획조사를 통한 신규 위험자 발굴 가능(자체 예산 활용, 선택적 실시)
  - \*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임대아파트 등 밀집지역, 알코올 의존, 정신질환 보유 등(예시: 서울시 ‘주거취약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만 65세·70세 도래자 전수조사’ 등)
- (유의사항) ①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돌봄 등 관내 수행 중인 타 사업의 대상자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자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사업담당자들에게 위험자 의심사례 발견 시 고독사 시범사업 담당자에게 연계\*하도록 안내
  - \* 시범사업 담당자 역할: 고독사 위험자로 판정 시 위험자로 명단 관리하면서, 기 지원 중인 타 사업 서비스는 유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범사업 유형 추가 지원 또는 타 사업(기존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으로 추가 연계 지원

②최근 인구 고령화 및 사회관계망 약화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시범사업 담당자는 본 사업 뿐 아니라 타 사업 간 연계도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을 고려해, 신규보다는 경력 있는 직원을 담당으로 배치할 것을 권고

〈참고사례〉 **즐생단이 찾아간다(대구)**

<p><b>추진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퇴직자 및 만학도들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인 '즐생단'으로 조직하여 고독사 위험자 방문조사 및 예방사업을 진행하고자 함</li> </ul>						
<p><b>주요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명 : 즐거운 생활지원단(즐생단)</li> <li>○ 사업유형 : 노인일자리 사업(사회서비스형·주 5일, 1일 3시간)</li> <li>○ 대상조건 : 60세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업무 경험자</li> <li>○ 대상규모 : 520여명 (2인 1조로 배치)</li> <li>○ 배 치 : 174개소(150개 읍·면·동, 24개 종합사회복지관)</li> <li>○ 기관협업 : 대구광역시, 시니어클럽협회, 지역대학, 복지관협회</li> <li>○ 기관별 역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민·관·학의 협업을 통해 지역내 새로운 복지자원 발굴</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협업개요</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margin: 0;"><b>시니어클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형 개설·운영</li> <li>• 대상자 모집 및 선정</li> <li>• 필수교육 및 급여 등 지원</li> </ul>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margin: 0;"><b>지역대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생·단 교육 (현장전문 교육)</li> <li>• 협약에 의한 사회공헌사업</li> <li>• 월~분기 1회 이상 권역별 실시</li> </ul>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margin: 0;"><b>읍면동 / 복지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생·단 업무 부여, 제시</li> <li>• 활동일지 관리 및 입력</li> <li>• 위기 발굴, 각종지원 연계</li> </ul>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대구 9개 구·군의 150개 읍·면·동과 희망 복지관에 2인1조로 배치 (추가신청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 margin: 0;">지역별 특화 상생협의로 역할조정 가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font-weight: bold;">                 즐·생·단 배치 및 역할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읍면동) ·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상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통보 위기가구 사전 방문</li> <li>•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활동, 각종 복지상담</li> <li>• 읍면동 요청사항(물품, 홍보물배부등) 이행 등</li> </ul> </td> <td style="width: 33%; padding: 5px;">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복지관) · 구·군 의뢰사례연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마트 운영지원 (2024년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사업(제1차))</li> <li>• 1복지관 1고독사 사업지원, 후원 연계</li> <li>• 복지관 요청사항 이행 등</li> </ul>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5px;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연결로 즐거운 생, 고독사 없는 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전문교육실시 후 배치 : 39시간(기본·안전교육 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지원(고독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방문실태조사 실습, 자살위기포착, 정신건강문제이해, 대상자면담과 대처, 지역서비스 연계, 심폐 소생술 등)</li> </ul> </li> </ul> </div>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margin: 0;"><b>시니어클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형 개설·운영</li> <li>• 대상자 모집 및 선정</li> <li>• 필수교육 및 급여 등 지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margin: 0;"><b>지역대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생·단 교육 (현장전문 교육)</li> <li>• 협약에 의한 사회공헌사업</li> <li>• 월~분기 1회 이상 권역별 실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margin: 0;"><b>읍면동 / 복지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생·단 업무 부여, 제시</li> <li>• 활동일지 관리 및 입력</li> <li>• 위기 발굴, 각종지원 연계</li> </ul>	즐·생·단 배치 및 역할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읍면동) ·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상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통보 위기가구 사전 방문</li> <li>•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활동, 각종 복지상담</li> <li>• 읍면동 요청사항(물품, 홍보물배부등) 이행 등</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복지관) · 구·군 의뢰사례연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마트 운영지원 (2024년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사업(제1차))</li> <li>• 1복지관 1고독사 사업지원, 후원 연계</li> <li>• 복지관 요청사항 이행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56b3; color: white; margin: 0;"><b>시니어클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형 개설·운영</li> <li>• 대상자 모집 및 선정</li> <li>• 필수교육 및 급여 등 지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margin: 0;"><b>지역대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생·단 교육 (현장전문 교육)</li> <li>• 협약에 의한 사회공헌사업</li> <li>• 월~분기 1회 이상 권역별 실시</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 margin: 0;"><b>읍면동 / 복지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즐·생·단 업무 부여, 제시</li> <li>• 활동일지 관리 및 입력</li> <li>• 위기 발굴, 각종지원 연계</li> </ul>					
즐·생·단 배치 및 역할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읍면동) ·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상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통보 위기가구 사전 방문</li> <li>•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활동, 각종 복지상담</li> <li>• 읍면동 요청사항(물품, 홍보물배부등) 이행 등</li> </ul>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 0;">(복지관) · 구·군 의뢰사례연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마트 운영지원 (2024년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사업(제1차))</li> <li>• 1복지관 1고독사 사업지원, 후원 연계</li> <li>• 복지관 요청사항 이행 등</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발굴단에 배치됨으로써 사업의 효과 제고</li> <li>○ 일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발굴단 동기 부여 제고</li> </ul>						

### 〈참고1〉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요(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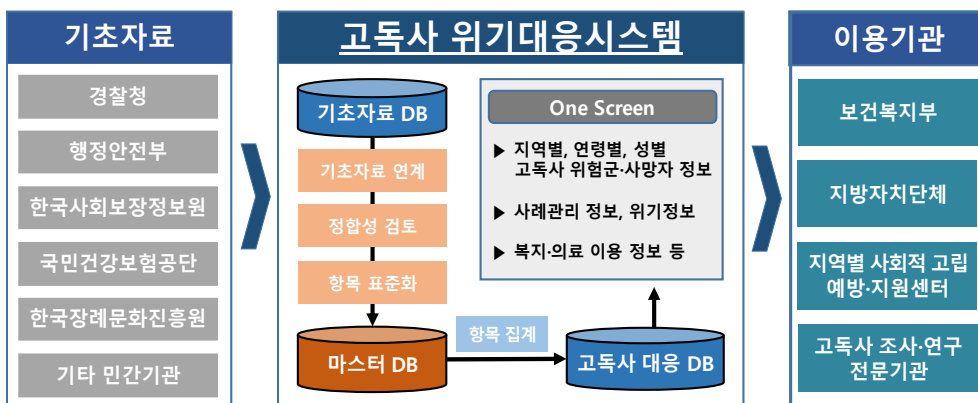
#### □ 주요목적

-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인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

#### □ 주요기능

- ① (위험자 발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  
\* 기존 경제적 위기 정보와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정책연구 중) 등 혼합
- ② (통계 생산·분석) 고독사 사망자 관련 유관기관 자료\* 연계 통해 고독사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기발생 요인 분석  
\* 경찰청(범죄 등 현장감식자료), 행안부(주민등록), 건보공단(요양급여), 장례진흥원(무연고사)

### 〈참고〉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개요도



- ③ (업무지원) 고독사 사건 상황보고(읍면동→시군구→시도·복지부) 체계 및 고독사 고위험자 통합사례 관리 업무지원 기능 구축

#### □ 향후 일정(안)

- '24년 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25년 본격 구축, '26년 운영

#### □ 기대효과

- 입수정보 확대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예측·선별제공으로 발굴업무 효율화
- 정례적인 고독사 통계 생산 및 근거 기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
-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독사 상황 분석 및 사례관리 이력 축적

**나 고독사 위험자 판정 및 관리**

■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로 선별하고, 명단과 사례관리 연계내용 또는 시범사업 서비스 지원내용을 별도로 관리

※ '24년 하반기 중 행복e음 상담사례관리시스템에 고독사 위험자 사례관리 기능(판단도구, 명단 관리 등)이 탑재될 예정으로, 기능 구축 전까지 자체 관리

- (판단도구) 표준 판단도구(보건복지부에서 '24년 상반기 중 제작·배포 예정), 자체 기준 또는 타 지자체(서울, 부산 등) 판단도구 활용
  -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는 자의 개입거부 등 판단도구의 사전 사용이 곤란한 경우, 담당자 자체 판단에 따라 도구 활용 없이 지원 가능(관리양식에 도구 미사용 사유 반드시 기재 및 개입거부 등 상황 해소 시 도구 사용관리(이력관리 필요))
- (명단 관리) 위험자 지원현황 관리 및 통계산출 등 위해 자체 시스템 또는 수기 등으로 관리 요망

\* 참고2 양식 참조

**<참고2> 고독사 위험자 수기관리양식 예시**

※ 아래는 예시일 뿐으로,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추진 바람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위험자 판단도구 사용시점	위험자 판단도구		연계사업									
							시범사업						타 사업			
					사업1		사업2		사업3		사업1	사업2				
					유형	점수	사업명	유형	사업명	유형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예)	홍길동	남	55	24-03-02	표준	90										

- 1) 위험자 판단도구 유형: 표준, 자체, 서울, 부산 중 택일
- 2) 시범사업 유형: ① 안부확인, ②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③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 사후관리, ⑤ 기타사업 중 택일하여 번호만 기재



### 〈참고3〉 서울시 고독사 위험자 판별기준(앞면)

구분	질문 내용	확인결과	배점기준	점수
① 실패·상실감 누적 (10)	① 최근 10년간 일과 관계에서 실패와 상실 경험 횟수는? - 이별(사별, 이혼, 결별 등), 배신, 폭력, 실직(시험, 사업), 패, 노숙, 수급탈락 경험 등	( )회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10) <input type="checkbox"/> 2회 미만( 0)	
	② 지난 1주일 평균 하루 식사 횟수는?	( )회	<input type="checkbox"/> 1회 이하(10)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 0)	
② 고립적 일상 (40)	③ 지난 1주일 동안 외출 횟수 횟수는?	( )회	<input type="checkbox"/> 1회 이하(10)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 0)	
	④ 지난 1주일 동안 만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소통한 횟수는?	( )회	<input type="checkbox"/> 1회 이하(10) <input type="checkbox"/> 2회 이상( 0)	
	⑤ 지난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Blackout)로 혼자서 술을 마신 횟수는?	( )회	<input type="checkbox"/> 1회 이상(10) <input type="checkbox"/> 없음 ( 0)	
③ 사회적 고립 (20)	⑥ 몸이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 )명	<input type="checkbox"/> 없음 (10) <input type="checkbox"/> 1명 이상( 0)	
	⑦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 )명	<input type="checkbox"/> 없음 (10) <input type="checkbox"/> 1명 이상( 0)	
④ 이동성 높은 생애 (10)	⑧ 지난 10년간 이사 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인 경우가 있는지?	X	<input type="checkbox"/> 있음 (10) <input type="checkbox"/> 없음 ( 0)	
⑤ 돌봄과 지원 중단 (10)	⑨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던 돌봄서비스와 치료를 중단 (퇴원)한 경우가 있는지?	X	<input type="checkbox"/> 있음 (10) <input type="checkbox"/> 없음 ( 0)	
총계	<input type="checkbox"/> 고위험군(70~90점) <input type="checkbox"/> 중위험군(40~60점) <input type="checkbox"/> 저위험군(30점 이하)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0점)			

#### □ 작성 개요

- 고독사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일상적 대화 방식을 활용하여 상담하고 내용을 기입함.
- 기본사항, 주요 문제 등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고독사 판별기준 체크리스트”에 적용.
- 기본사항, 주요문제와 중복되는 경우 부가적으로 확인 필요
  - 가족상황, 수입과 수급 상황, 사회활동, 질병 등 주요 욕구에 대한 질문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참고3> 서울시 고독사 위험자 판별기준(뒷면)**

□ 주요 항목별 질문 및 작성 가이드

구분	질문 및 작성 가이드
<p><b>① 실패·상실감 누적</b></p>	<p>[질문예시] 최근 10년간에 이혼, 사별, 시험실패, 수급 탈락 등이 4회나 있으셨네요? 대답 듣기</p> <p>[기록방법] 사업실패와 동업자의 배신이 동시 발생한 경우는 2회로 기록 자녀 사망과 이혼이 동시 발생한 경우 2회로 기록 수급탈락과 노숙이 동시 발생한 경우도 2회로 기록 등</p>
<p><b>② 고립적 일상</b></p>	<p>[질문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지난 1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몇 끼를 드세요? 주로 어떤 식사를 하세요?</li> <li>• 외부, 사회활동은 어떻게 하시는데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난 1주일간 밖에 나간 횟수, 사람을 만나거나 문자로 소통한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li> <li>• 혼자 술 드세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드세요? 그런 경우가 지난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되나요?</li> </ul> <p>[기록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 과자 등의 간식 외 식사, 라면은 식사로 간주, 과자와 술만 먹는 경우는 식사에서 제외</li> <li>• 외부, 사회활동: 외출 횟수, 사람을 만나거나 문자로 소통한 횟수 기록</li> <li>• 술: 1주일간 혼자서 술을 드신 횟수, 혼자 술을 드시다가 Blackout 경험한 횟수 등 기록</li> </ul>
<p><b>③ 사회적 고립</b></p>	<p>[질문예시] 선생님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있어요? 각각 몇 명이나 될까요?</p> <p>[기록방법] 각 항목별로 해당사항 유무,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 명수를 기록</p>
<p><b>④ 이동성 높은 생애</b></p>	<p>[질문예시] 이 집에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지난 10년간 몇 번이나 이사를 다니셨어요?</p> <p>[기록방법] 지난 10년간 이사경험 10회이상 이거나 거주지 미상이었던 경험 유무 파악 기록</p>
<p><b>⑤ 돌봄과 지원 중단</b></p>	<p>[질문예시] 퇴원하고 치료나 입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관련 돌봄서비스는 안 받으시나요?</p> <p>[기록방법] 다양한 이유로 돌봄서비스, 입원치료를 중단한 경험 유무 파악 기록</p>

〈참고4〉 부산시 고독사 위험자 판별기준

사회적 고립가구 생활실태 조사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집전화 :		핸드폰 :		
주거유형	일반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맨션 <input type="checkbox"/> 주택						
	거주취약지	<input type="checkbox"/> 반지하 <input type="checkbox"/> 옥탑방 <input type="checkbox"/> 고시원 <input type="checkbox"/> 쪽방 <input type="checkbox"/> 여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항목						그렇다	아니다	
사회적 고립도	1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2	2주에 1번 이상 외출한다. (단순 생필품 구입, 병원진료, 관공서 방문 등 필수목적 제외)						
	3	가족, 친족, 친구, 이웃 등과 전화, 방문 등 연락은 평균적으로 2주에 1회 이상이다.						
	4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지 않다.						
	5	몸이 아플 때 집안일 등 부탁할 사람이 있다.						
	6	기관이나 복지상담사 등이 방문해 나의 생활에 관여해도 괜찮다.						
가구 취약성	1	수입원이 있고 경제활동 중이다.						
	2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임대료 체납, 퇴거위기, 주거환경 불량 등문제가 없다.						
	3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공과금 등을 미납한 적은 없다.						
	4	감당하기 힘든 만성적 신체질환이 없다.						
	5	지난 2주간 심한 우울감을 느끼지 않았다.						
	6	술로 끼니를 때우거나 조절이 안된 적은 없다.						
판단기준	① 고위험군 : 사회적 고립도 및 가구취약성 모두 '아니다' 3개 이상 ② 중위험군 : 사회적 고립도 '아니다' 3개 이상 / 가구취약성 '아니다' 0~2개 ③ 저위험군 : 사회적 고립도 '아니다' 0~2개 / 가구취약성 '아니다' 3개 이상							
<b>생활실태 조사에 따른 서비스 안내 및 통계 관리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b> <b>■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b>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li> <li>•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 생활 실태 조사내용</li> </ul>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제공 및 통계	해당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종료후 5년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 수집항목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 예방 및 관리 서비스



### ■ 시군구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의 사회관계망 형성 및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4개 유형의 서비스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함

- (사업유형) ①안부확인, ②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사후관리
  - (중복제공) 동일인에게 시범사업 유형별 서비스 4종 모두 제공 가능
  - (유의사항) ①기준에 지방비 및 민간재원으로 4개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동 시범사업의 해당 유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사업계획, 실적보고 시 포함하여 제출할 것(예산재원 명시))
    - ②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단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는 대상자의 개입거부 등으로 판단도구의 사전 사용이 곤란한 경우, 담당자 자체 판단에 따라 도구 활용 없이 지원 가능(위험자 관리 양식에 도구 미사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개입거부 등 상황해소 시 도구 사용관리)
    - 같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중앙정부의 다른 공모사업 또는 기존 사업들과 중복지원은 피하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효과·시너지 증대
- \* 타 사업 자원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 적극 연계 검토

### 가 안부확인

#### ■ 인적 자원망 활용

-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및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예산지원항목)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보험료,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조끼, 명함, 뱃지 등) 등
- (지출불가항목) 수당은 지원 불가. 타 사업으로 지원 중인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b>&lt;참고사례&gt;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단 운영(우리동네 1촌 돌봄단)(강원)</b>	
<b>추진배경</b>	○ 사회적 고립가구는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발굴이 쉽지 않아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함
<b>주요내용</b>	○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단 운영 -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돌봄서비스 미이용가구 정기적인 안부확인 ○ (사업기간) 2023.2.~2023.12. ○ (사업규모) 42명(우리동네 1촌 돌봄단) ○ (시행주체) 강릉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수행체계) 예산지원(경로장애인과), 사업계획(복지정책과), 사업수행(강릉종합사회복지관), 배치 및 관리(읍면동) ○ (추진절차)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강릉종합사회복지관) 돌봄단 선발 → 21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배치 → 주 5일(하루 3시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업무 수행 → 활동실적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제출
<b>기대효과</b>	○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발굴단에 배치됨으로써 사업의 효과 제고 ○ 일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발굴단 동기 부여 제고

**〈참고사례〉 건강음료 안부확인 서비스(제주)**

<p><b>추진배경</b></p>	<p>○ 도내 1인가구 증가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사회관계망 형성 및 대면안부확인 서비스 필요</p>
<p><b>주요내용</b></p>	<p>○ 지원기준 : 월 15회(회당 2,000원 내외)</p> <p>○ 지원대상 : 도내 1인 가구* 1,550명(제주시 1,000, 서귀포시 5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혼자 생활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li> <li>· (1순위)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위험자 장년층 1인 가구</li> </ul> <p>○ 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나,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생활하는 경우</li> <li>※ 다만,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장애, 노령으로 대상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li> <li>- 병원 입원(10일 이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퇴원(소)시 지원</li> </ul> <p>○ 추진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시 : 1인 가구 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li> <li>- 읍면동 : 1인 가구 조사, 음료 업체로부터 특이사항 접수 시 가정방문</li> <li>- 건강음료 공급 및 배달 업체 : 음료 전달 및 대상자 안부 확인</li> </ul>
<p><b>기대효과</b></p>	<p>○ 한국야쿠르트와 결연으로 도내 홀로 사는 중장년 가구에 대한 상시 안부확인 체계를 구축</p> <p>○ 고독사 위험자 대면 안부 서비스 제공으로 외로움 감소</p>

### 〈참고사례〉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사업 운영(대전)

<p><b>추진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사건, 1인가구 고독사 반복 등 고질적 이슈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조치가 시급</li> </ul>												
<p><b>주요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빅데이터 활용·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등기우편 배송 및 위기정보 수집으로 집배원이 복지위기상황을 지자체에 신속히 전달</li> <li>○ (사업기간) 2023. 7. ~ 12.</li> <li>○ (사업규모) 복지사각지대 3,300가구 (중구 700, 유성구 1,700, 대덕구 900)</li> <li>○ (시행주체) 구 희망복지지원단, 협약우체국</li> <li>○ (수행체계)</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구 희망복지지원단 (중구, 유성구, 대덕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복지등기우편요청)</p> <p>↖ (우편배송 및 발굴된 위기정보 전달)</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협약우체국 (서대전, 유성, 대덕)</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절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사전 절차</th>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우편물 제작 접수</th>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우편물 배달</th>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수집정보 회신</th>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수집정보 활용</th>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지원 정보 공유</th> </tr> </thead> <tbody> <tr> <td>- 업무협약 - 계약체결 구우체국</td> <td>⇒ - 복지정보 안내문 발송 * 월100명 대상 구</td> <td>⇒ - 집배원 배달 시 위기 정보 수집 우체국</td> <td>⇒ - 수집된 정보 회신 * 담당자 메일 우체국→구</td> <td>⇒ - 1인가구 복지 서비스 지원 동 협조</td> <td>⇒ - 위기 대상처 지원 결과 및 정보 공유 구우체국</td> </tr> </tbody> </table>	사전 절차	우편물 제작 접수	우편물 배달	수집정보 회신	수집정보 활용	지원 정보 공유	- 업무협약 - 계약체결 구우체국	⇒ - 복지정보 안내문 발송 * 월100명 대상 구	⇒ - 집배원 배달 시 위기 정보 수집 우체국	⇒ - 수집된 정보 회신 * 담당자 메일 우체국→구	⇒ - 1인가구 복지 서비스 지원 동 협조	⇒ - 위기 대상처 지원 결과 및 정보 공유 구우체국
사전 절차	우편물 제작 접수	우편물 배달	수집정보 회신	수집정보 활용	지원 정보 공유								
- 업무협약 - 계약체결 구우체국	⇒ - 복지정보 안내문 발송 * 월100명 대상 구	⇒ - 집배원 배달 시 위기 정보 수집 우체국	⇒ - 수집된 정보 회신 * 담당자 메일 우체국→구	⇒ - 1인가구 복지 서비스 지원 동 협조	⇒ - 위기 대상처 지원 결과 및 정보 공유 구우체국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밀착형 방문인력인 집배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확장 및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li> <li>○ 집배원에 대한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통해 업무 중 사각지대 발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공협력 강화</li> </ul>												

■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 (내용) AI, 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AI 안부전화, 스마트 플러그, 한전 AMI, 앱, 카카오톡 채널 등  
(여러 가지 기기 혼합 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기기 지원 가능)

AI를 활용한 안부전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SK 누구돌봄케어콜 등
한전 AMI 살핌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확인으로 비대면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응 (한전:ON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스마트 플러그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원플러그에 연결하여 집안의 조도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여 안전 확인
앱(APP) 활용	고독사 위험자 개인 핸드폰에 지자체별 살미피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조작 감지. 지정시간 동안 조작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알림문자를 지자체가 수신 시 긴급출동 및 보호조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이용하여 위기가구 비대면 발굴을 활성화

- (예산지원항목) 기기 구입 및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통신비 등



### 〈참고사례〉 고독사 위험가구 스마트플러그 24시간 관제센터 운영(서울)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 및 그로 인한 고독사의 사회문제화 대응 필요</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li> <li>○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li> <li>○ 사업대상 : 市 및 자치구 자체 조사에 의거 발굴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로구 등 21개구 총 3,937가구 대상 모니터링 운영 중(구비 운영 포함)</li> </ul> </li> <li>○ 사업내용 : IoT활용 스마트플러그 설치로 고독사 위험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시간 전력량, 조도 변화가 없을 경우 → 담당자 컴퓨터·휴대폰으로 알림 서비스 전송</li> <li>- 알림 수신 시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전화(1차), 가정방문(2차) 등 안부 확인 및 조치</li> </ul> </li> <li>○ 운영체계 : 기기 설치 → 실시간 위험신호 모니터링 → 긴급조치(맞춤형서비스 제공)</li> <li>○ 24시간 관제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 9:00 ~ 18:00] 수행기관 :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區) 스마트플러그 운영계획 수립, 기기 구매·계약, 교육, 설치 지원, 모니터링 등</li> <li>· (洞) 스마트플러그 대상자 선정, 기기 설치, 상시 모니터링, 긴급대응, 맞춤형 지원</li> </ul> </li> <li>- [평일야간 18:00 ~ 09:00 및 휴일] 수행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內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스마트플러그 위험신호에 대한 모니터링</li> <li>· 민간경비업체, 동주민센터, 소방, 경찰 등 공조체계를 통한 긴급출동으로 상시 위기 대응</li> <li>· 평일야간: 18:00~09:00,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4시간</li> </ul> </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의 상시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 도모</li> </ul>

〈참고사례〉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사업(대구)

<p><b>추진배경</b></p>	<p>○ 상시 관리가 필요한 고독사 고위험자의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예방서비스 필요</p>
<p><b>주요내용</b></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활동이 비교적 단절된 중,장년 고독사 고위험자 가정 내 시스피커를 설치, 24시간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고독사 예방 및 고위험자 관리</li> <li>- AI안부전화대상자와 차별, 집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대상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신청곡 재생, 뉴스·운세·날씨 등에 대한 문답, 일상에 대한 감성대화, 치매예방 체조 및 게임 등 특화기능 탑재, 해당 지자체 행사·복지소식알림 등</li> <li>• (관리) ICT케어센터 운영(일반·심리상담사 배치)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돌봄 안심케어 서비스, 이상 신호 시 119출동, 결과는 담당자 e-메일로 전송</li> </ul> </li> <li>* 포켓파이 기기 제공, 인터넷 없이도 사용 가능(데이터 10기가 무료제공)</li> </ul>
<p><b>기대효과</b></p>	<p>○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 개인의 이상 징후나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p>

## 나 생활 개선 지원

### ■ 생활환경 개선

- (내용)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
- (예산지원항목) 안전바 등 낙상방지 용품 설치, 저장강박 집 청소비 등
  - 타 사업\*에서 동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우선 연계 검토
  - \*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등

<b>&lt;참고사례&gt; 고독사 위험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충북)</b>	
<b>추진배경</b>	○ 1인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함
<b>주요내용</b>	○ (사업내용) 저장강박증을 보유한 고독사위험자 대상, 청소·소독 및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외 주거개선이나 저장강박증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 위험요인 중 하나인 주거환경으로부터의 위험요인 제거  ○ (사업기간) 2023. 5. ~ 2023. 12. (8개월)  ○ (시행주체)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수행기관) 진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추진절차) - 대상자 발굴(읍·면) → 현장확인 및 서비스 의뢰(군) → 대상자 선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 → 대상자 사후관리
<b>기대효과</b>	○ 고독사 위험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참고사례〉 고립 1인 가구 정리수납 지원(울산)

<p><b>추진배경</b></p>	<p>○ 사회적 고립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리수납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p>										
<p><b>주요내용</b></p>	<p>○ 사회적 고립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대상</p> <p>○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p> <p>○ 방문 정리수납(옷장, 냉장고, 주방 등), 생활폐기물 배출, 생필품 등 지원</p> <p>○ (사업추진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인력) 13개 동 찾아가는 복지팀, 정리수납 관련 업체 인력</li> </ul>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height: 100px;"> <tr><td style="padding: 5px;">업무협약</td></tr> <tr><td style="padding: 5px;">구, 업체</td></tr> </table> <span>⇒</span>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height: 100px;"> <tr><td style="padding: 5px;">대상자 의뢰</td></tr> <tr><td style="padding: 5px;">동</td></tr> </table> <span>⇒</span>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width: 150px; height: 100px;"> <tr><td style="padding: 5px;">대상자 방문 지원 필요성 검토</td></tr> <tr><td style="padding: 5px;">구, 동·업체 (사전방문)</td></tr> </table> <span>⇒</span>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width: 100px; height: 100px;"> <tr><td style="padding: 5px;">정리수납 지원</td></tr> <tr><td style="padding: 5px;">구, 업체</td></tr> </table> <span>⇒</span>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width: 150px; height: 100px;"> <tr><td style="padding: 5px;">사후관리 (동·업체)</td></tr> <tr><td style="padding: 5px;">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작성 (동⇄업체)</td></tr> </table> </div> <p>○ 추진기관별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지원과: 정리 수납 업체 업무협약, 사업비 지원 등</li> <li>- 동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및 추천, 대상자 사후관리, 필요시 공용마대 지원</li> <li>- 정리수납관련 업체: 의뢰 대상자 주거 환경 사전 확인, 정리수납 지원 및 사후관리</li> <li>- 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필요시 대상자와 1:1 결연 연계로 안부확인</li> </ul>	업무협약	구, 업체	대상자 의뢰	동	대상자 방문 지원 필요성 검토	구, 동·업체 (사전방문)	정리수납 지원	구, 업체	사후관리 (동·업체)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작성 (동⇄업체)
업무협약											
구, 업체											
대상자 의뢰											
동											
대상자 방문 지원 필요성 검토											
구, 동·업체 (사전방문)											
정리수납 지원											
구, 업체											
사후관리 (동·업체)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작성 (동⇄업체)											
<p><b>기대효과</b></p>	<p>○ 고독사 위험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함</p>										

## ■ 생활행태 개선

- (내용)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및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지급 등
- (예산지원항목) 안부 확인용 생필품·도시락·음료 등 지원, 외출 유도형 생활쿠폰(편의점, 미용실, 빨래방 등), 복지책자 등 안내문 제작·배포
  - 소액 물품만 가능하며, 생계유지 지원 수준의 제공은 타 사업 연계

### 〈참고사례〉 ‘청결한 하루, 건강한 인생’ 목욕서비스 지원사업(부산)

추진배경	○ 목욕시설이 없는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확인 및 외출 유도													
주요내용	<p>○ 목욕시설이 없는 열악한 주거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가구에 목욕이용권 1인 월 2매 지원</p> <p>○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1:1 결연, 목욕이용권 전달 및 안부확인</p> <p>○ (사업추진체계)</p> <p>- (사업 인력) 중구청 3명, 중구종합사회복지관 1명, 동주민센터(9개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p> <p>* 협약체결 목욕업소 : 17개소</p> <table border="1" data-bbox="399 1222 1245 1616"> <tr> <td data-bbox="399 1222 459 1443" rowspan="2">업무절차</td> <td data-bbox="489 1222 662 1443">① 지원대상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참여모집</td> <td data-bbox="692 1222 849 1443">② 목욕업소 협약체결 및 목욕권 배부</td> <td data-bbox="879 1222 1052 1443">③ 목욕권 전달 및 안부확인, 목욕업소 이용 및 비용지급</td> <td data-bbox="1082 1222 1245 1443">④ 참여자 만족도 등 설문조사 및 사업 모니터링</td> </tr> <tr> <td data-bbox="399 1473 459 1616">추진주체</td> <td data-bbox="489 1473 662 1616">동 주민센터</td> <td data-bbox="692 1473 849 1616">중구청, 목욕업소</td> <td data-bbox="879 1473 1052 1616">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구청</td> <td data-bbox="1082 1473 1245 1616">중구청</td> </tr> </table>				업무절차	① 지원대상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참여모집	② 목욕업소 협약체결 및 목욕권 배부	③ 목욕권 전달 및 안부확인, 목욕업소 이용 및 비용지급	④ 참여자 만족도 등 설문조사 및 사업 모니터링	추진주체	동 주민센터	중구청, 목욕업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구청	중구청
업무절차	① 지원대상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참여모집	② 목욕업소 협약체결 및 목욕권 배부	③ 목욕권 전달 및 안부확인, 목욕업소 이용 및 비용지급	④ 참여자 만족도 등 설문조사 및 사업 모니터링										
	추진주체	동 주민센터	중구청, 목욕업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구청	중구청									
기대효과	○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 확인 및 행태개선으로 사회적 고립 완화													

**다**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공간 운영

- (내용) 고독사 위험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자가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지·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조성
  - \*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 (예산지원항목)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소모품 등
- (지출불가항목) 내구성물품\*은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므로, 경상보조비로 지출 불가
  -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물품분류지침 제2조)

**〈참고사례〉 숙등 뒤편지 공유센터 조성(부산)**

<b>추진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덕천동 지역에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수 있는 문화시설 부족</li> <li>○ 문화시설과 경로당 등 복합 커뮤니티 거점 시설 확보 필요</li> </ul>
<b>주요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연면적 2100</li> <li>○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li> <li>○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100㎡</li> <li>○ (시행주체) 부산광역시 북구청</li> <li>○ (추진절차) 실시설계 완료, 2023년 발주 및 착공 예정</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준공 및 운영 계획.</li> <li>○ 어린이도서관, 경로당, 돌봄센터, 동아리실 등 다양한 세대를 이용 대상으로 하는 복합 커뮤니티 거점으로 기대</li> </ul>

**<참고사례> 전포열차길 발개마을센터 조성(부산)**

추진배경	○ 65세 이상 노인인구 29.8%, 1인 독거노인 가구 21.8%로 노령인구 밀도가 높은 전포2동 일원의 노인중심시설 조성으로 활력회복
주요내용	○ (사업내용) 사업면적 58,601㎡ ○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 ○ (사업내용) 전포열차길 발개마을센터 조성, 단단이 모임터 조성, 발개지킴이공원 및 편안길 조성 등 ○ (시행주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 (추진절차) 실시설계(발개마을센터) 및 공사 중, 2024년 준공 예정
기대효과	○ 발개 지킴이공원, 단단이 모임터, 전포열차길 발개마을센터 등 다양한 노인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기능의 활력 회복에 기여

**<참고사례> 공유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운영(대전)**

추진배경	○ 주민 간 연결 공간 필요 및 커뮤니티 공간 내 공동체 활동으로 사회관계망 구축 효과 도모
주요내용	○ (사업내용)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조성을 통해 사회 관계망 구축 ○ (사업기간) 2023. 1. 1.~2023. 12. 13. / 연중 ○ (사업규모) 8개 마을커뮤니티공간(기 조성 3개 운영, 신규 5개 조성) ○ (시행주체) 유성구 ○ (지원사항) 커뮤니티공간 운영비, 인건비 및 신규 조성 리모델링비 등 ○ (추진절차) - 공공형 : 구 유휴공간 발굴→리모델링→공간조성→주민협의체구성 - 민간형 : 공모사업 공고접수→선정위원회 심사→공동체 협약→공간조성
기대효과	○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공간 신규 조성으로 공유공간 접근성 도모 및 공동체 발굴 육성 ○ (관계망 형성) 커뮤니티공간 운영으로 취미활동, 생활도움 등 교류활동 지원 및 주민 간 연결 촉진

## ■ 프로그램 운영

- (내용) 공동체 공간 또는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공동체 공간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상세히 설명하고 타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공동체 공간이 있음에도, 상황\*에 따라 타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공간이 협소한 경우, 요리 등 특정시설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 〈 프로그램 예시 〉

- 자조모임, 대안적 가족공동체 형성 지원
- 문화활동(요리, 독서, 꽃심기 등 취미 활동)
- 체육활동(걷기, 운동, 자세교정 등 생활체육 활동)
- 식사지원(커피모임, 점심모임 등)
- 역량강화교육(물품정리 등 생활개선, 키오스크 사용법 등)

- (예산지원항목)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 위한 물품 구입비, 다과비 등

### 〈참고사례〉 희망찬 동행, 미1.1.9.(경기 하남시)

<b>추진배경</b>	○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낮추기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사업 필요
<b>주요내용</b>	○ 동네친구 만들기를 위한 Social Dinning 지원을 통한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공유공간, 식재료, 요리강사를 지원하여 중장년 1인가구 또래가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사업대상: 오피스텔 및 임대아파트 거주 중장년 1인가구 ○ 연령기준 : 35세~49세 ○ 자산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b>기대효과</b>	○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한 고립감 해소 및 정신건강 문제 개선과 사회적 기능 회복



### 〈참고사례〉 민관협력 5060행복 day 사업(경남)

추진배경	○ 장년층 5060 고독사 증가에 따라 집밖활동으로 사회구성원 복귀 등 사회관계망 형성이 필요																																	
주요내용	<p>○ (사업내용) 고위험자 1인가구 장년층 은둔형 가구에 대해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외부활동(집밖활동)지지 프로그램 운영 ⇒ 고독사 위험 은둔형 가구를 외부활동에 동참시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또 다른 은둔형 고독사 위험가구를 함께 발굴</p> <p>○ (사업기간) 2023.6월 ~ 12월</p> <p>○ (사업방법)</p> <table border="1" data-bbox="409 870 1251 1203"> <thead> <tr> <th>방법</th> <th>주체</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가</td> </tr> <tr> <td></td> <td></td> <td>, , 가</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사업비) 39,000천원(시비 100%)</p> <p>○ (사업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405 1320 1251 1606"> <thead> <tr> <th>사업수행자</th> <th>사업비</th> <th>사업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경남종합사회복지관</td> <td>8,500</td> <td>◆ 쿠킹클래스, 가을나들이, 공예체험, 자격증 취득반 아카데미</td> </tr> <tr> <td>내서종합사회복지관</td> <td>8,500</td> <td>◆ 낚시활동, 요리활동, 환경정화활동, 반찬나누기활동, 공연관람활동</td> </tr> <tr> <td>마산종합사회복지관</td> <td>7,000</td> <td>◆ 요리교실, 가을나들이, 심리치료, 취미공방</td> </tr> <tr> <td>성산종합사회복지관</td> <td>7,000</td> <td>◆ 영화관람, DIY체험, 요리체험, 나들이, 봉사활동</td> </tr> <tr> <td>진해종합사회복지관</td> <td>8,000</td> <td>◆ 말반찬 나눔활동, 김장 나눔활동, 나들이, 영화관람</td> </tr> </tbody> </table>	방법	주체	내용			가			, , 가			.				사업수행자	사업비	사업내용	경남종합사회복지관	8,500	◆ 쿠킹클래스, 가을나들이, 공예체험, 자격증 취득반 아카데미	내서종합사회복지관	8,500	◆ 낚시활동, 요리활동, 환경정화활동, 반찬나누기활동, 공연관람활동	마산종합사회복지관	7,000	◆ 요리교실, 가을나들이, 심리치료, 취미공방	성산종합사회복지관	7,000	◆ 영화관람, DIY체험, 요리체험, 나들이, 봉사활동	진해종합사회복지관	8,000	◆ 말반찬 나눔활동, 김장 나눔활동, 나들이, 영화관람
방법	주체	내용																																
		가																																
		, , 가																																
		.																																
사업수행자	사업비	사업내용																																
경남종합사회복지관	8,500	◆ 쿠킹클래스, 가을나들이, 공예체험, 자격증 취득반 아카데미																																
내서종합사회복지관	8,500	◆ 낚시활동, 요리활동, 환경정화활동, 반찬나누기활동, 공연관람활동																																
마산종합사회복지관	7,000	◆ 요리교실, 가을나들이, 심리치료, 취미공방																																
성산종합사회복지관	7,000	◆ 영화관람, DIY체험, 요리체험, 나들이, 봉사활동																																
진해종합사회복지관	8,000	◆ 말반찬 나눔활동, 김장 나눔활동, 나들이, 영화관람																																
기대효과	<p>○ 은둔형 고독사 위험자의 집밖 활동을 지지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p> <p>○ 지역 사정에 밝은 복지관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p>																																	

**라 사후관리**

**유품정리, 특수청소**

- (내용) 고독사 의심사례 중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 민법상 상속·유품정리 관련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경우 또는 상속의 법적 처리가 필요없는 오염물 제거에 한해 지원
  - 타 사업에서 동일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면, 해당 사업을 우선 연계 검토(일회성 서비스보다 고독사 예방사업 우선 지원)
  - 11.10까지 대상자가 없으면 해당 예산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중 타 유형으로 사업계획변경 후 집행가능

**<참고사례> 고독사 특수청소비 지원(강원)**

<b>추진배경</b>	○ 고독사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의 심리적인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특수청소 필요						
<b>주요내용</b>	○ (사업내용) 특수청소 비용 지원 ○ (사업기간) 2023.1.~2023.12. ○ (사업규모) 10구 ○ (시행주체) 강릉시 ○ (수행체계) 특수청소업체 ○ (추진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신청 선정 지원</td></tr> <tr><td>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특수청소, 운구비 등 신청</td></tr> </table> <span style="margin: 0 10px;">→</span>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신청 선정</td></tr> <tr><td>복지정책과 지원 결정</td></tr> </table> <span style="margin: 0 10px;">→</span>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지원</td></tr> <tr><td>관련 서류 구비하여 복지정책과 지급 요청</td></tr> </table> </div>	신청 선정 지원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특수청소, 운구비 등 신청	신청 선정	복지정책과 지원 결정	지원	관련 서류 구비하여 복지정책과 지급 요청
신청 선정 지원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특수청소, 운구비 등 신청							
신청 선정							
복지정책과 지원 결정							
지원							
관련 서류 구비하여 복지정책과 지급 요청							
<b>기대효과</b>	○ 고독사 사망자의 존엄한 사후지원 및 지역사회 관심 환기 ○ 유가족 및 지역주민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						

■ 앞서 소개한 4개 사업유형 외에 다른 모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거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함
-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본계획) 사회적 유대 형성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2-2-②)

- 사회복지관(475개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 지원
  - \* 사회복지시설 평가(사회복지관)에 '주민관계망 형성 실적'을 확대 반영('24년~'26년)
  - 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예시) 독거노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에서 건강(해독)음료 생산·배달 등을 통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 활동 실시(부산 북구)
  - 사회적 고립가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가족공동체\* 등 형성 지원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경제·돌봄 등)를 공동으로 대처
  - \* 각종 법·제도적 권리·책임 바탕으로 엄격한 결합보다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 (2~5인)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바탕으로 느슨한 가족 결합 형태로 추진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4-1-①)

- (중앙)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앙 단위 전문 기관 지정
- (지역)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센터 지정
  - ※ 서울시는 '23년부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서울시복지재단 內)' 설치·운영
  - 지역 내에서 유사업무 수행 중인 기존센터\*를 최대한 활용·지정
  - \* (예시) '사회복지관(475개소)', '가족센터(244개소)',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 유의사항

- 사업 계획서에 기타사업 모형의 필요성, 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사업 예산은 전체 시범사업 예산의 5% 이내로 함

# IV

chapter

## 주요 연계가능 서비스

〈 주요 서비스 개요 〉

- 가. 문화로 사회연대
- 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다. 청년마음건강센터
- 라. 청년도전지원사업
- 마.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차. 노인맞춤돌봄사업
- 카.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 타. 통합사례관리사업
- 파. 온가족보듬사업





## 주요 서비스 개요

\* '23. 5월 수립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의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연계할 수 있음

\* 지원분야: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 및 사업내용을 근거로 분류

서비스명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분야*								기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주거	일상 생활 (돌봄)	일자리	관계	안전	문화 · 여가	
문화로 사회연대	전체								○	문화체육 관광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장애인							○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센터	청년		○							보건복지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					○				고용노동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체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청년, 중장년				○					보건복지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중장년					○				고용노동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노인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	노인				○					보건복지부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사업	전체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전체						○			여성가족부

**가 문화로 사회연대** 문체부

**■ 사업 목적**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껴 고립·은둔을 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주민 대상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등 참여 유도
- \* 인문 매개 심리 지원을 통해 위로와 공감, 자존감 회복 등 지원

**■ 서비스 대상**

- 희망복지지원단 및 지역 협업 기관·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은둔·고립을 택할 위기에 처한 정서적 취약계층

**■ 서비스 내용**

- 주관단체(공모) 및 지역거점(9개소)을 중심으로 ‘사회적 연결성 척도’를 활용, 지역내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외로움·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연결 회복 지원(문화 케어프로그램 운영)
- \* '24년도 지역거점 :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9개소
- \* '23년도 지역거점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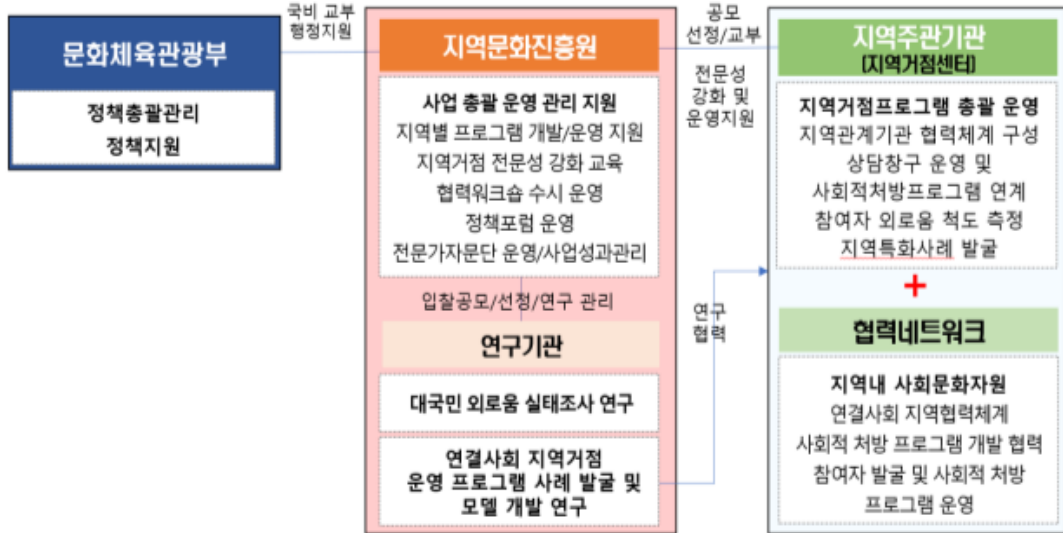
지역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충남 아산시	강원 춘천시	부산 영도구
구분	수상한 협동조합	충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텃밭인문학 작은도서관	춘천문화재단	영도문화 도시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152	104	98	188	136
협력 네트워크	46	18	29	29	13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런치 양성</li> <li>• 도토리 학교</li> <li>• 지역 미션 해결</li> <li>• 동네 워킹투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상담 및 진단</li> <li>• 문화예술 프로그램</li> <li>• 친친모임 (사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 마을 텃밭</li> <li>• 독서 프로그램</li> <li>•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마음 스테이션</li> <li>• 도시마음 산책 (도시자원형, 삶 변화형)</li> <li>• 안녕 포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똑똑똑 예술가</li> <li>• 똑똑똑 예술배달</li> <li>• 안녕 마음 초대</li> <li>• 마주봄 페스티벌</li> </ul>



## ■ 서비스 흐름도

● 문체부 → 수탁기관(공모를 통한 선정) → 기관운영

\* '23년도 추진체계도



## ■ 주요 추진계획

- (지역거점 확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은둔·고립 등 정신적 취약계층을 대상,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계적 확대 추진
  - ※ ('24년) 9개소, ('25년) 13개소, ('26년~) 17개소
- (지역협력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및 공공기관 등 지역 협업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 ※ '23년 민간중심의 협력체계(135개)구축, 사회통합의 순기능 강화

## ■ 사업 담당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문화로 사회연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044-203-2522
	공모후 선정	

## 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복지부

### ■ 사업 목적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

### ■ 서비스 대상

- 스스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독거노인·장애인
  - (노인) 독거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  
노인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 1인·2인에 따라 독거가구, 2인가구와 기준 동일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거나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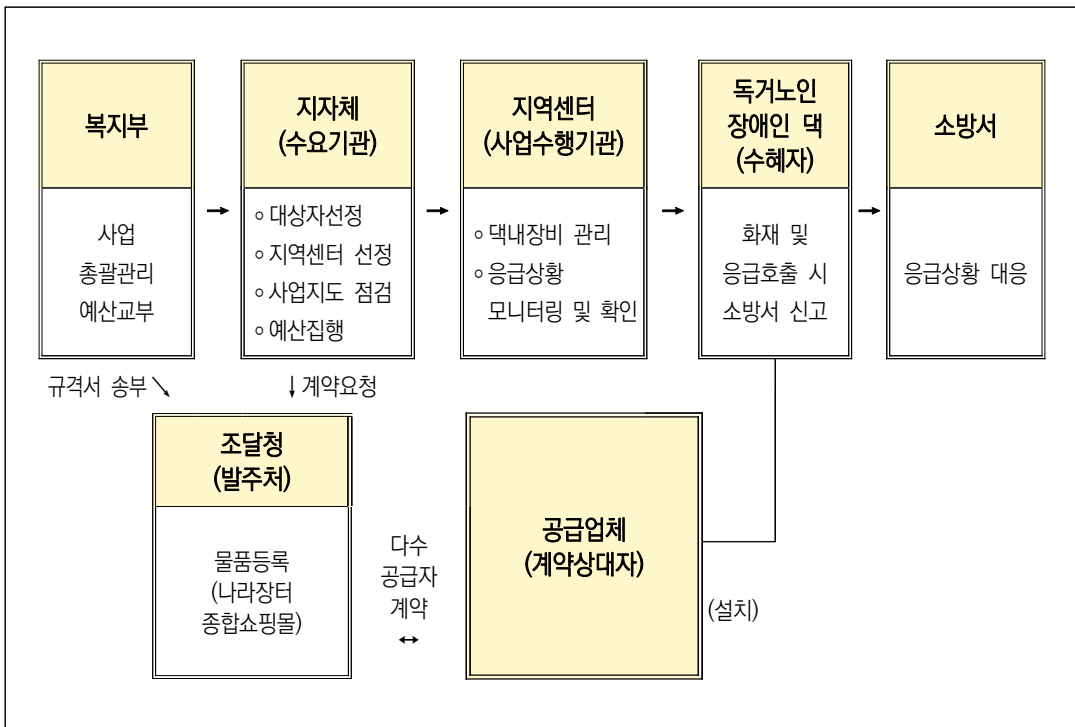
###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발생)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곧바로 연결
  - (응급호출)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를 눌러, 응급상황 시 간단히 119 연결
  - (활동미감지) 일정시간(1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으로 알람이 전송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전화·영상통화 등 안부확인 실시
- (부가서비스) 영상통화, 노래, 스트레칭 영상 등 정서·건강관리 지원

## 〈택내 설치 기기〉



## ■ 업무 흐름도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대상(단, 서울 및 일부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에게만 제공)

### ■ 연계방안

- 읍면동 및 시군구 시범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디지털돌봄시스템(<https://biz.dcare.go.kr>)

### ■ 사업 담당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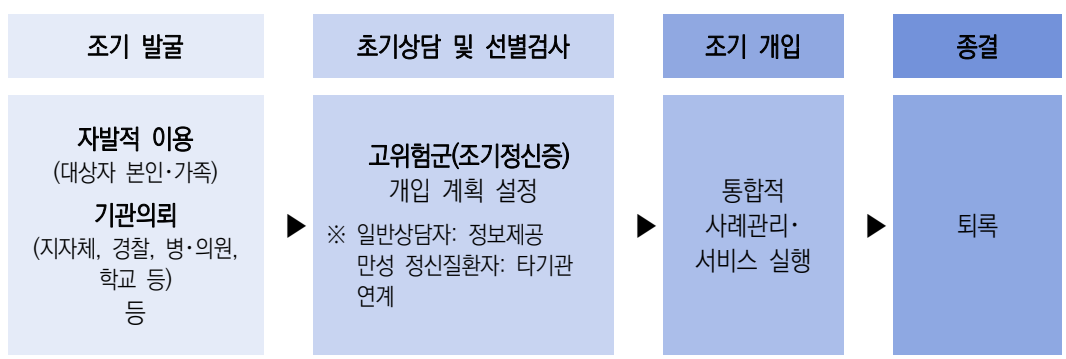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9, 3454, 3457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위탁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복지안전사업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7-1

## 다 청년마음건강센터 복지부

### ■ 사업개요

-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
- (대상)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만 19~34세\*\*)
  - \*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정동장애(F31) 등 조현병 범주장애 / 우울장애(F32~34), 불안장애(F41) 등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 불안장애 / 그 외 F코드로 진단을 받은 자(치매, 지적장애 제외)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15~19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 가능
- (내용) 정신증 고위험군 청년 발굴,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정신건강 진료연계 지원 등
  - \* 온/오프라인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약물투약 관리지원, 토래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 ■ 업무 흐름도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지자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울	<a href="https://blutouch.net/maumhada/">https://blutouch.net/maumhada/</a>	02-3675-8630
부산 진구	<a href="http://www.youngmind.or.kr/">http://www.youngmind.or.kr/</a>	051-710-2661
대구	<a href="https://www.youthdgmhc.or.kr/">https://www.youthdgmhc.or.kr/</a>	053-565-2030
인천	<a href="https://www.청년마음으로.kr/">https://www.청년마음으로.kr/</a>	032-212-1934
광주	<a href="http://www.mindlink.or.kr/">http://www.mindlink.or.kr/</a>	062-267-3120
대전	<a href="https://www.djyouthmindlink.co.kr/">https://www.djyouthmindlink.co.kr/</a>	042-471-1535
울산	<a href="https://www.usmindlink.or.kr/">https://www.usmindlink.or.kr/</a>	052-223-1534
세종	<a href="http://www.sjcmhc.com/">http://www.sjcmhc.com/</a>	044-865-4597
경기 남양주시	<a href="http://www.ncmhcyouth.or.kr/">http://www.ncmhcyouth.or.kr/</a>	031-592-5893
강원 춘천시	<a href="http://www.youthforest.org/">http://www.youthforest.org/</a>	033-242-7574
충북	<a href="https://www.cbmind.or.kr/">https://www.cbmind.or.kr/</a>	043-217-0597
충남 아산시	<a href="http://www.ayml.net/">http://www.ayml.net/</a>	041-547-5580
전북	<a href="https://youth.jbmhc.or.kr/">https://youth.jbmhc.or.kr/</a>	063-270-9700
전남 순천시	<a href="http://www.scmindlink.or.kr/">http://www.scmindlink.or.kr/</a>	061-811-0130
경북 포항북구	<a href="http://phmindlink.com/">http://phmindlink.com/</a>	054-270-4767
경남	<a href="http://www.minddandi.or.kr/">http://www.minddandi.or.kr/</a>	055-286-1008
제주	<a href="http://www.jejumind.or.kr/">http://www.jejumind.or.kr/</a>	064-717-3051~5

■ 연계방안

- 읍면동 및 시군구 시범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정신증이 의심되거나 진단 5년 내인 경우 인근 청년마음건강센터로 의뢰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044-202-3872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 02-2204-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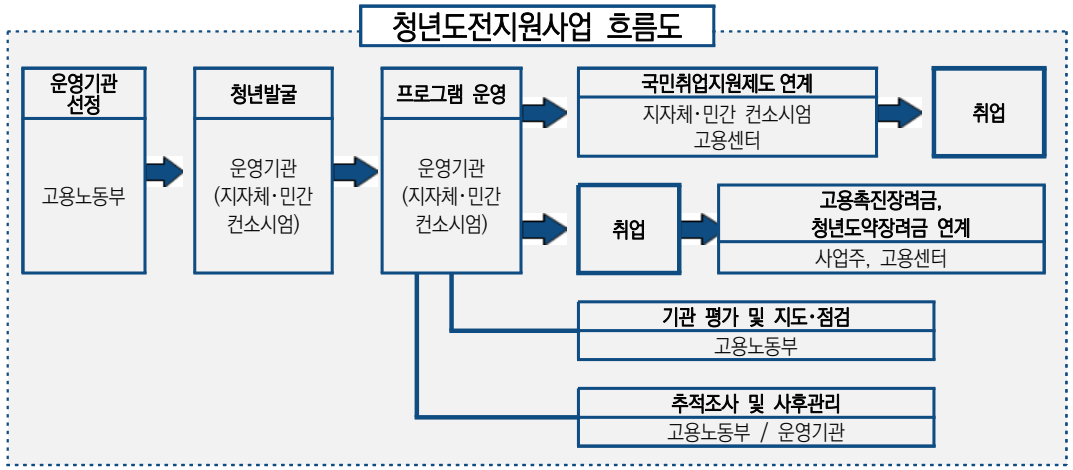
# 라 청년도전지원사업<sup>고용부</sup>

## ■ 사업개요

- (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대상) 만 18세~34세이하 구직단념 청년 등
- (지원내용)

구 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중기	장기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원 내용	참여수당	▶이수시 50만원	▶150만원(50만원×3회)	▶250만원(50만원×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국취 I 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취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근속 시 5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5만원

## ■ 업무 흐름도



Chapter  
**IV**  
주요 연계가능 서비스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지자체 중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 ■ 연계방안

- 지자체 등 운영기관 직접 방문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

### ■ 홈페이지

- <https://youthchallenge.kr/>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14



# 마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sup>고용부</sup>

## ■ 사업 목적

-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 (일경험 정의) 청년이 취·창업 전 미리 직무 관련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또는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

## ■ 기본방향

- 민간 주도(경제단체, 산업별 협·단체)로 양질의 일경험 활성화
- 청년 수요와 기업 선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맞춤형 매칭’ 실현 지원

### 【청년 일경험 활성화 중점과제(안)】

<p>① 일경험 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li> <li>▲ 지역·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li> <li>▲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li> </ul>	<p>② 일경험 단계별 맞춤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경험 맞춤형 매칭 지원</li> <li>▲ 참여 청년 지원 및 보호</li> <li>▲ 자율적 소통 및 확인서 발급 지원</li> </ul>	<p>③ 일경험 질적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평가</li> <li>▲ 민·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확산</li> </ul>
-----------------------------------------------------------------------------------------------------------------------------------------	-----------------------------------------------------------------------------------------------------------------------------------------------------	----------------------------------------------------------------------------------------------------------------------------------

- 특히, 청년의 일경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제공, 민간 주도의 일경험 공급 저변을 대폭 확대(협·단체 중심)
- 인턴형 등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니트 특화 일경험 및 해외 인턴형 신설, 청년친화 ESG 지원 일원화 등 확대 개편
  - ▲ (인턴, 1.9만명) 청년이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현업을 수행, 실전형 직무역량을 쌓는 과정
  - ▲ (프로젝트, 6천명) 청년 직무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기업 과업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 (ESG지원형, 8천명) 기업이 ESG 경영차원에서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 (기업탐방, 1.5만명) 청년 진로 설정 및 직무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업탐방, CEO 대화, 멘토링’ 등

## ■ 지원대상

- 미취업 청년\* 및 10인 이상 국내·외 우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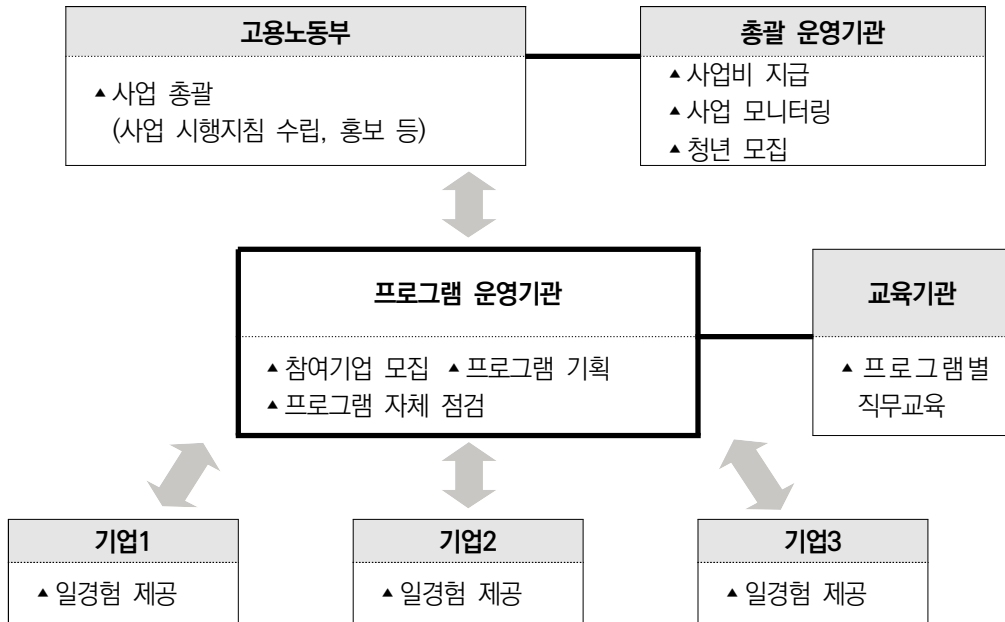
\* 기업탐방 유형은 재학생, 구직단념·자립준비청년, 청년장병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 사업 구성체계

- 일경험 내용·방식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유형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기간	2~4개월 내외	2개월 내외	프로그램별 상이	5일 이내
수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li> <li>•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li> <li>• 기업 또는 운영기관 지정 전문가가 수행 과정 코칭</li> <li>•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을 심사·평가하여 피드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 수행</li> <li>• 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CEO 및 현직자와의 대화 등</li> </ul>
사전 교육	직업기초능력 + 직무교육 (40시간 이상)		프로그램 안내	직업기초능력 교육(OT)
지원 내용	청년	참여수당	프로젝트 수행비	-
	기업	멘토수당 등 운영·관리비	프로젝트 기획·코칭·심사 등 운영·관리비	운영비 지원 (대기업 50% 매칭) - 시설 이용 등 운영비
	기타	프로그램운영비 (운영기관) 직무교육운영비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기관) 직무교육 운영비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운영기관)
'24년 지원규모	<b>1.9만</b>	<b>0.6만</b>	<b>0.8만</b>	<b>1.5만</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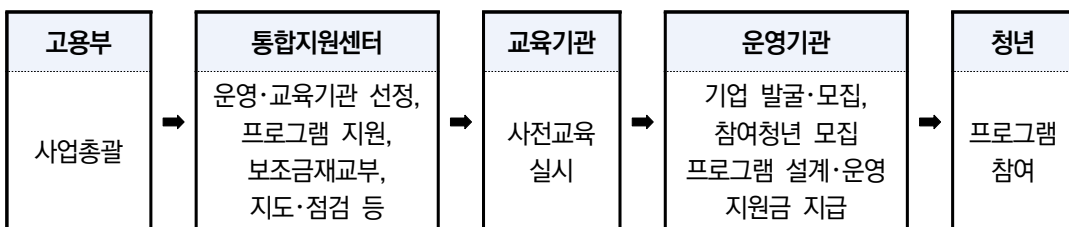
### 【참여기관 역할체계도】



#### ■ 추진일정

- '23.1월(총괄 운영기관 모집) ~ '24.2월(사업 종료)
- \* (운영기관 모집) '24.2월 → (프로그램 진행) '24.3~'25.2월

#### ■ 업무 흐름도(사업추진체계)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 ☐ 홈페이지

- 청년 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experi/index.do](http://www.work.go.kr/experi/index.do))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55

## 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sup>복지부</sup>

### ■ 사업 목적

- 지역 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

### ■ 서비스 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급) 제외)
  - 지자체에서 경제적·사회적·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 \* ① 만 65세 이상 노인 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③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④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⑤ 중장년 고독사 위험자 등

###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건강상태 평가(대상자 분류)에 따라 건강행태 및 질환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필요시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분류기준 및 방문횟수 >**

군 분류	대상자	방문횟수
<b>집중 관리군</b>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경우(만성질환자) - 장애인으로 건강문제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건강위험군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등) - 고위험 허약노인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환이 있고,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경우	8회 이상 /3개월
<b>정기 관리군</b>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위험군)	1회 이상 /3개월
<b>자기역량 지원군</b>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정상군)	1회 이상 /6개월

### ■ 업무 흐름도 (절차)

- 보건소(수행기관) 업무 흐름
  - 대상자 발굴·등록 → 건강문제 스크리닝(기초조사표 및 건강상담 등) → 서비스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261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 ■ 연계방안

- 읍면동 및 본청 시범사업 담당부서에서 의뢰된 대상자 정보를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PHIS) 내 등록 후, 추가 건강기초조사(노인 허약판정 등) 실시
- 통합사례관리회의에 방문건강관리 담당자가 참석 협조하여 고독사 위험자 대상 사례관리 실시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02, 2812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헬스케어팀 ☎ 02-3781-3577, 3570
방문건강관리사업 (시스템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정보부 ☎ 02-6360-6931, 6942

# 사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복지부

### ■ 사업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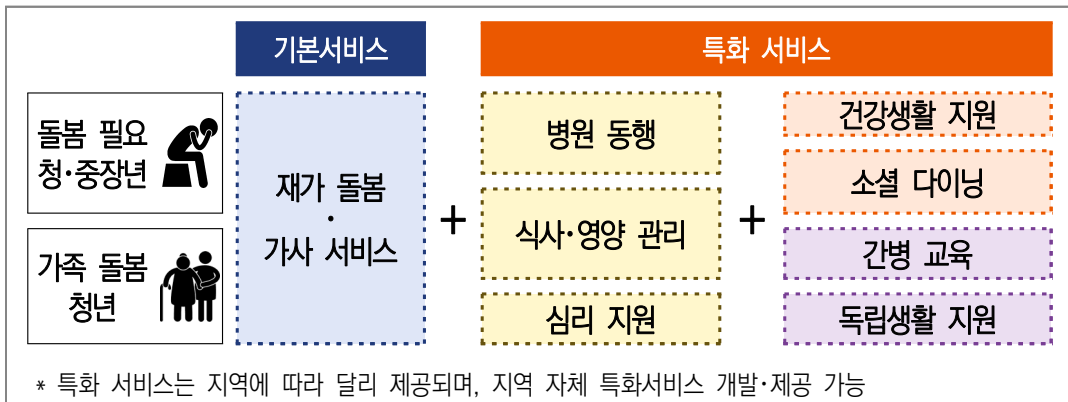
### ■ 서비스 대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
- **가족 돌봄 청년(13~34세)**
  -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12, 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 서비스 가격

- (기본 서비스) 월 216,000원 ~ 1,296,000원(이용시간에 따라 다름)
- (특화 서비스)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초과~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24.1월 이후 변경될 수 있음(약 100여개 시군구 예상)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시·도	참여 시·군·구	
	수	시군구명
서울	1	서대문구
부산	16	전체 시군구
대구	9	전체 시군구
인천	2	연수구, 부평구
광주	5	전체 시군구
대전	5	전체 시군구
울산	5	전체 시군구
세종	1	세종시
경기	5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	7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충북	1	청주시
충남	15	전체 시군구
전북	5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2	영암군, 해남군
경북	4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	2	김해시, 창원시
제주	2	전체 시군구

## ■ 관련 홈페이지 안내

- 보건복지부 누리집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지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 ☎ 02-2271-9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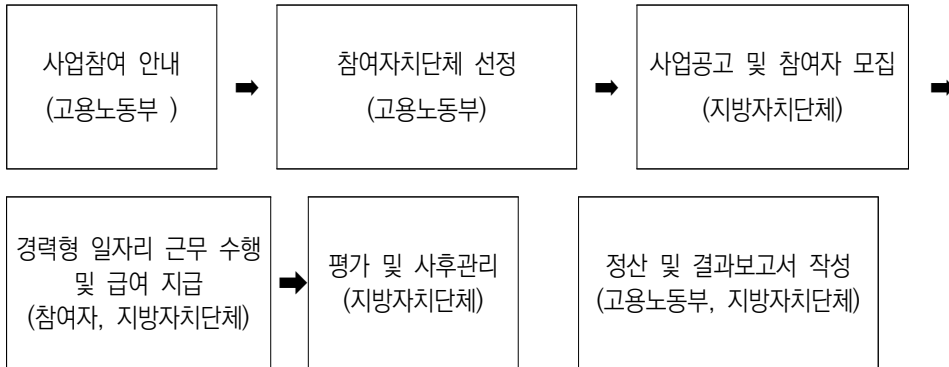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지원
-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28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4

■ 사업개요

- (규모) '24년 1,500명, 127억원
- \* ('19년) 2,051명 → ('20년) 2,394명 → ('21년) 3,089명 → ('22년) 3,515명 → ('23년) 2,848명
-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등
-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 (참여분야) 경영전략, 인사노무,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등 13개 분야
- (지원수준) 최저임금 이상 및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제공
- \* 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 추진체계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사업 참여 자치단체 현황(붙임)

### 연계방안

-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자치단체 현황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9

## 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sup>복지부</sup>

### ■ 사업 목적

-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 마련

### ■ 서비스 대상

-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등

###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연계) 의료-돌봄-요양 등 관련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장기요양, 일상지원 사회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서비스 우선 연계 후 부족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보충적 개발·제공 원칙 적용
- (방문의료) 지역사회 내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가의료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연계,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방안 마련

### ■ 참여 지자체(사업기간: '23.7월~'25.12월)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주시
-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 연계방안

-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 044-202-3031,3035

### ■ 사업 목적

- 장기요양 이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지연·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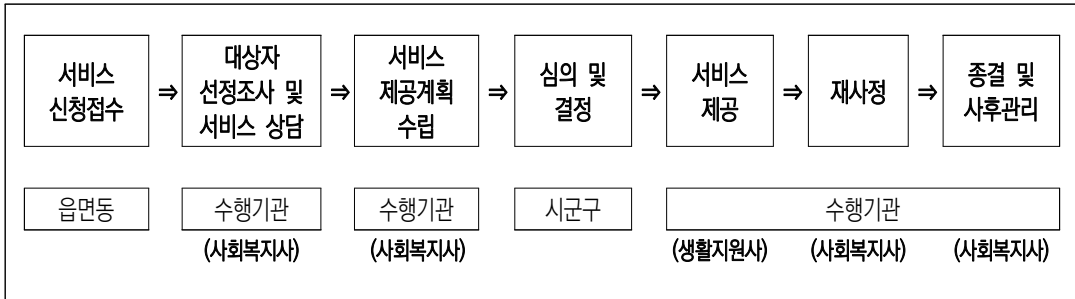
###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내용 등 지원 수준 다름
  -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 업무 흐름도

-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70개소) 및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3.9만명) 채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전담사회복지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

- (생활지원사) 직접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



### ■ 연계방안

-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or.kr)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3461
	중앙 노인돌봄 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센터 ☎ 1661-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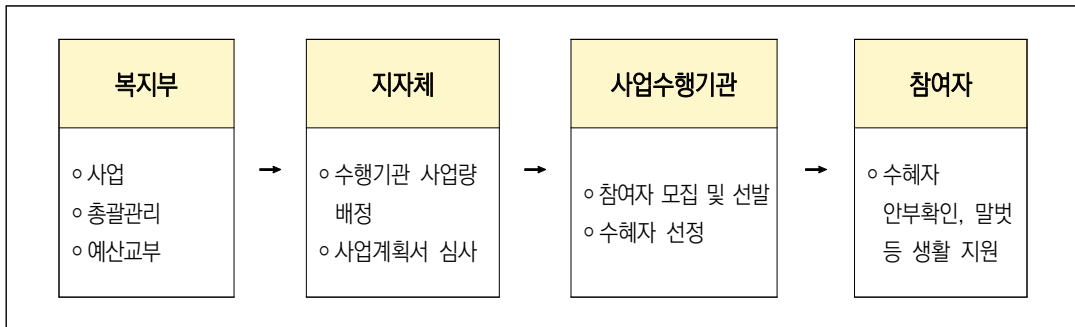


## 카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sup>복지부</sup>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등 생활안전 점검 서비스 등 제공
- (제공자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돌봄대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노인 중 보호 필요도에 따라 우선 지원

### ■ 업무 흐름도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약 1,280개소\*  
\* 노인복지관(278개)·대한노인회(202개)·노인일자리지원기관(200개)·지자체(139개) 등

### ■ 연계방안

-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참여자가 독거노인 등 말벗,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http://www.kordi.or.kr))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 ☎ 031-8035-7541~7549

###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향상

### ■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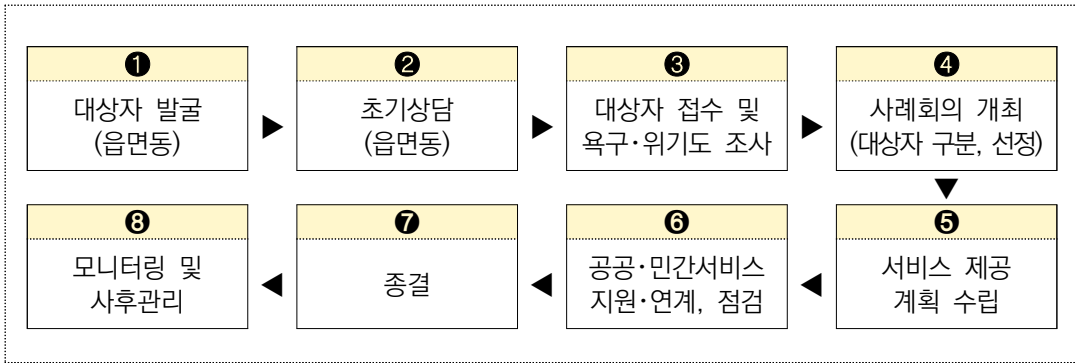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 서비스 내용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지원

### ■ 서비스 흐름도

-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례관리를 수행
  - \* 단, 고난도 사례의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의뢰하여 진행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읍면동 및 시군구(고난도 사례)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34,3133

## 파 온가족보듬사업<sup>여가부</sup>

### ■ 사업목적

- 1인가구, 노부모부양가족, 조손가구 등 취약·위기가족에게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자원연계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역량 강화 지원

### ■ 지원 대상

- 1인 가구, 노부모부양가족, 조손가구 등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지원 가능

### ■ 서비스 내용

- 전국 가족센터(220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사례관리	대상자 정책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만 15세 이하 자녀 대상 학습정서지원 - 만 18세 이하 (손)자녀 양육 가족 및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생활도움지원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및 자기돌봄 교육 - 원가정 회복지원, 면접교섭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심리·정서지원, 긴급돌봄지원, 1인가구 병원동행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연계

### 연계방안

-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시군구 담당부서 등을 통해 온가족보듬사업 대상자(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취약·위기가족) 발굴 시 가족센터 연계

### 사업 담당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온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9

# V

chapter

## 시범사업 관리 및 행정사항

1. 예산 편성 집행 관리
2. 시범사업 평가
3. 행정사항 및 기타





# 1

## 예산 편성 집행 관리

### ■ 예산 편성·집행

- 개별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민간기관 위탁 등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가능

\* 자체재원 또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추가재원을 통한 사업 추진 포함

### ■ 기본 원칙

-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 회계 규칙, 기타 개별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예산을 타 시범사업 또는 타 보건복지부 사업 예산 등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지출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부기명 단위\*’까지 명시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 추후, ‘부기명 단위’까지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한 관리 요망

### 〈 예산 집행 계획 (예시)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부기명	예산액	산출기초
	편성목	통계목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고독사예방사업 기기구입·설치	40,000 (국 20,000, 도 12,000, 시 8,000)	- 400천원×100가 구 = 40,000천원
	...	...	...	...	...

- 사업 간 예산 배분은 지자체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하되, 특정 사업 유형에 총 사업 예산의 50%까지 지출 가능
- 기타 사업 예산은 총 사업 예산의 5% 이내로 함
- (인건비) 개별 시군구로 배정되는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 \* 민간기관 위탁 시, 민간기관에서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기초지자체가 편성한 예산의 15% 이내로 편성
- (민간기관 위탁) 일부 예산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시, 예산 집행 점검, 결산 및 사후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총괄
- (현금성 지원) 지원 불가\*
  - \* 사회적 연대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 취지, 한정된 자원, 형평성 등 고려
- (기기 활용) AI, IoT 기술 등을 활용한 기기를 이용하여 안부확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준의 기기를 보급하여 기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
  - \* 유의사항: 동 시범사업 국비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 중요재산 취득과 같은 자본형성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신규 개발 서비스에 대한 단가, 본인부담금은 기존 제도 수준에 준하여 책정(기존 제도 대비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등 지양)

#### ■ 예산 변경 절차(증감 목 예산규모 기준)

- (총 예산의 30% 이내) 시군구 자체승인 → 시·도, 보건복지부 보고
  - \* 발간된 최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교부조건 등에 부합
- (30% 초과 50% 이내) 시군구, 시·도 보고 → 시·도 검토·승인 후 보건복지부 보고
- (50% 초과) 시군구, 시·도 및 보건복지부 보고 → 보건복지부 검토·승인

# 2

## 시범사업 평가

### 평가개요

#### ● 목적

- 시범사업의 운영결과가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 ● 평가체계

- 효과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실시함
  - (운영과정 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지표\*에 근거한 전반적인 운영과정 분석. 이후 필요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시범사업 운영실적, 대상자 현황 등 파악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연구용역 수행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 포함

- (성과평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수행
- (종합평가) 2024년 12월 사업 종료 이후 수행

※ 단,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업대상의 참여전후 변화측정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전 사전 측정 실시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시범사업 운영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①공통지표와 ②선택지표로 구성

① **공통지표**: 사회적고립도(12문항)와 외로움(3문항)의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을 위해 **전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사업 참여 대상에 대해 측정 후 **반드시 제출**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측정. 단, 사업의 규모가 커 **전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자 일부 측정(사업당 30명 이상)**

\*\* 제출 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평가지표에 반영 고려

② **선택지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사업의 목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 **자율 선택하여 측정** 및 관리하는 지표(복지부 제출 대상 아님)

I. 공통지표

-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지자체가 모든 모형(사업)을 대상으로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측정
- 측정값은 '지표 측정 양식(공통지표)'(엑셀 파일)에 기록하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제출

〈표 1-1〉 공통지표 개요

지표명	응답자	측정 주기	총 문항 수
사회적 고립도	대상자	사전 및 사후 측정	12
외로움	대상자	사전 및 사후 측정	3
적극적 발굴	시군구	추후 확정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전)	-
고독사 발생	시군구 (미참여 시군구 포함)	추후 확정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전)	-

1. 사회적 고립도

- 사회적 고립도는 주로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수준으로 측정함
-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 개념이며 사회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임
- OECD 사회적 고립도(Social isolation), 통계청 사회조사 중 사회적 연결망, 루벤 사회적 연결망 척도(Lubben Social Network Scale-6, LSNS-6)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도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시함

〈표 1-2〉 사회적 고립도(1) - 사적 지지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몇 명 있으십니까?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포함)	있다	없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명	(0)
2.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 )명	(0)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명	(0)

〈표 1-3〉 사회적 고립도(2) - 공적 지지(사람)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몇 명 있으십니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제외) (사회복지사, 통반장, 마을활동가 등)	있다	없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명	(0)
2.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 )명	(0)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명	(0)

〈표 1-4〉 사회적 고립도(3) - 공적 지지(기관)

Q.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계십니까? 몇 곳을 알고 계십니까? (읍면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있다	없다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 )곳	(0)
2.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 )곳	(0)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 )곳	(0)

〈표 1-5〉 사회적 연결망 - 연락

Q.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 대해 떠올려보십시오.	있다	없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이 있으십니까? 몇 명 있으십니까?	( )명	(0)

〈표 1-6〉 사회적 연결망 - 연락 빈도

문항	거의 연락하지 않음	월 3회 이내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가족, 친지, 친구, 이웃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취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표 1-7〉 외출 빈도

문항	거의 외출하지 않음	월 3회 이내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귀하는 지난 1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외출하셨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 2. 외로움

-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임
  - 영국 통계청(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영국 외로움 부가 추진하는 외로움 대응 전략의 효과 측정을 위해 “UCLA 외로움 척도 - 성인용 단축형 (UCLA 3-item scale for adults)” 척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표 1-8〉 UCLA 외로움 척도 - 성인용 단축형

Q.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부족하다는 느낌	①	②	③
2. 나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	①	②	③
3.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	①	②	③

## 3. 적극적 발굴

- 고립된 대상자를 사회적 고립으로 벗어나게 하도록 노력하여 얼마나 성공하였는지를 측정

(1) 측정값1 : 접근 성공 사례 수 / 초기 거부자 수

- 초기 거부자의 정의: 위기군으로 추정되어 접촉하였으나 상담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사례 수 (전화는 받았으나 자세한 상담은 거부하고 끊는 경우, 방문하였으나 대화를 거절한 경우 등)
- '접근 성공'의 정의: 상담 또는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에 응하거나, 향후 주기적 안부확인에 동의한 사례 수  
안부확인 외 서비스 이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상담 및 현황 파악 결과 위기군이 아닌 경우, 주기적 안부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접근 성공'으로 간주함

(2) 측정값2 : 접근 시도 횟수 / 초기 거부자 수

- '접근 시도'의 정의: 유선 연락, 방문 등 거부자에 대한 접촉 시도 횟수

4. 고독사 발생

● 측정값 : 고독사 사망자 수

- 고독사의 기준은 각 시·도별로 기준을 통일하여 기초지자체에 적용함  
집계값 보고 시 기준을 함께 제출
- 시·도에서 통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미참여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 기초지자체의 고독사 사망 수를 집계

II. 공통 지표 측정 방법

● 개인 수준 사회적 고립도 및 외로움의 측정 시기

- 사전 측정: 발굴 시점  
발굴 후 욕구조사 등 설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문항을 포함하여 측정 (발굴시점을 '신규'로 체크)  
시범사업 이전에 이미 발굴된 경우, 시범사업 개시 후 첫 번째 서비스 제공 전 혹은 가능한 이른 시점에 측정 (발굴시점을 '기존'으로 체크)
- 사후 측정: 최종보고 직전 (11월 말~12월 초)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최종보고 직전 (11월 말~12월 초) 측정은 동일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는 종료된 시점에 측정

- 지자체에서 유사한 다른 지표(척도)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경우
  - 가능한 경우 공통지표(척도)로 교체할 것을 권고 드림
  - 불가능한 경우 기 활용 중인 지표(척도)로 측정하고, 사용한 지표(척도) 및 측정 방식을 함께 보고
- 조사표 구성
  - 문항 표현 및 척도(4점, 5점 등)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표 양식은 수정 가능함  
발굴 대상자 등에 이미 활용 중인 서식에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 개인 수준 사회적 고립도 및 외로움의 측정 대상 범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측정함  
선택모형 사업이 아닌 타 사업 서비스에 연계된 대상자도 측정함  
발굴은 되었으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한 경우 사전측정만 실시하며, 가능하다면 서비스 제공과 별개로 사후측정도 실시함 (11월 말~12월 초)
  - 단, 규모가 매우 커 전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자의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 사전 및 사후측정을 실시함 (사업 당 30명 이상)  
사전과 사후가 동일인이라면 가장 좋으나 불가능할 경우 다를 수 있음. 단, 무작위 추출 기준을 엄수함  
무작위 추출 방식: 엑셀 난수표 생성을 통한 무작위 추출 등
- 거부자, 기피자에 대한 무리한 측정은 지양
  -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무리한 측정으로 인해 서비스 연계를 거절할 위험이 큰 경우 생략 가능
- 개인 수준 사회적 고립도 및 외로움 측정 시 유도하는 질문 방식은 지양
  - 조사자가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값을 유도하는 질문은 지양  
예) “어르신, 어려우실 때 저희가 도와드릴다고 했으니 도와줄 기관이 1개 이상은 된다고 하셔야겠죠?” (X)



### III. 선택지표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사업의 목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측정, 관리하는 지표 목록

#### 1. 신뢰

##### 1) 일반화된 신뢰

- 사회 속의 불특정 다수에 대해 가지는 신뢰
  - 도움이 필요할 때 불특정다수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고립감과 밀접하게 관련됨

〈표 3-1〉 일반화된 신뢰(1)

문항	매우 믿을 수 있다	약간 믿을 수 있다	별로 믿을 수 없다	전혀 믿을 수 없다
Q.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①: 4점, ②: 3점, ③: 2점, ④: 1점

〈표 3-2〉 일반화된 신뢰(2)

Q.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은 날 공정하게 대해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대체로 날 도와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 2) 정부 신뢰

- 정부기관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제도)에 대한 신뢰
  -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 신뢰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적 안전망에 도움을 요청하는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됨

〈표 3-3〉 정부 신뢰

Q. 귀하는 다음 기관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 살고 있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읍면동)	①	②	③	④
2. 자신이 이용 중이거나 알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등)	①	②	③	④

\* ①: 4점, ②: 3점, ③: 2점, ④: 1점

2. 서비스 이용 결과 및 효과

1) 서비스 만족도

- 대상자가 받은 서비스 또는 참여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 문항이 많아질수록 응답자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어 단일문항으로 구성

〈표 3-4〉 서비스 만족도(1) - 단일문항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Q. 귀하는 전체적으로 귀하가 받으신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 ①: 4점, ②: 3점, ③: 2점, ④: 1점

- 필요 시 8문항으로 구성된 원칙도를 활용하거나 기존에 적용해온 척도를 적용 가능
  - 사업 수행기관에서 특정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만족도만 측정 시 기존 방법대로 수행하고, 측정방법을 명시

〈표 3-5〉 서비스 만족도(2) - CSQ-8(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문항	매우 좋다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1. 귀하가 받았던 서비스(들)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①	②	③	④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는 귀하가 원했던 서비스(들)을 받았습니까?	①	②	③	④
3. 귀하가 받으신 서비스(들)은 귀하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습니까?	①	②	③	④
4. 귀하가 받은 서비스(들)에 대해서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5. 만약 귀하가 아는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있을 때 동일한 서비스를 받길 권유하겠습니까?	①	②	③	④
6. 귀하가 받은 서비스는 귀하가 가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7. 귀하는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8. 다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서비스(들)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 ①: 4점, ②: 3점, ③: 2점, ④: 1점

2) 도움요청역량 (서비스이용역량)

-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타인 또는 공적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역량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밀접하게 연관됨

(1안) 어려움 대응 역량

〈표 3-6〉 어려움 대응 역량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심각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안) 응급상황 대응 역량

〈표 3-7〉 응급상황 대응 역량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기관)을 알고 있고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안부확인형의 경우, 기기에서 수집가능한 데이터 목록 및 관련 대응 지표를 파악하여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권고  
예) 위기 신호 감지 시 담당인력이 대응에 소요된 시간(분)

3) 문제해결정도

-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제공된 서비스를 통해 해소된 정도로, 긍정적인 서비스 경험을 통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곳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연관됨  
- 각 사업별로 서비스에 의한 해당 대상자에 관련된 문제 및 해결정도를 대상자와 대상자의 관리자가 각각 평가

〈표 3-8〉 문제해결정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상자) 귀하가 받은 ( )서비스(들)은 귀하가 가진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관리자) 해당 대상자가 받은 ( )서비스(들)이 대상자가 가진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대상자 문항은 서비스 만족도(CSQ-8) 6번 문항과 동일

#### 4) 문제예방정도

- 도움요청역량과 문제해결정도가 높은 주민의 비율을 높여, 지역의 문제예방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영한 지표

##### (1안) 도움요청역량이 높은 대상자의 비율

- 측정값 = (목표치 이상의 도움요청역량을 지닌 대상자 수) / (측정값이 있는 위기군 수)
- 도움요청역량 목표치(예: 4점)를 정하고 측정값이 있는 위기군 중 목표치 이상인 대상자의 비율 측정

##### (2안) 문제해결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비율

- 측정값 = (목표치 이상의 문제해결정도를 지닌 대상자 수) / (측정값이 있는 위기군 수)
- 문제해결정도 목표치(예: 4점)를 정하고 측정값이 있는 위기군 중 목표치 이상인 대상자의 비율 측정

5) 우울

- 대상자의 정신건강 수준 변화를 측정
  - 사회적 고립감 및 외로움과 밀접하게 연관

〈표 3-9〉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Q. 지난 2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곤란을 겪으셨습니까?	없음	2,3일 이상	7일 이상	거의 매일
1.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2.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깬다/혹은 너무 많이 잤다	①	②	③	④
4.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①	②	③	④
6.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 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8.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9.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①	②	③	④

\*\*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합계: 0~4 우울증 아님, 5~9 가벼운 우울증, 10~19 중간정도 우울증, 20~27 심한 우울증

IV. 선택지표 측정 방법

- 지자체의 사업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여 모니터링에 사용
  - 선택모형별 권고 지표 참조(〈표 4-1〉)
  - 사후관리 중심형 모형의 지표는 선택지표에서 생략하였으며, 지자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 제시된 지표는 권고사항이며, 이 외 지표도 활용 가능함
  - 기타 지표 활용 시 향후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 활용한 지표, 문항, 척도에 관한 설명을 포함
  - 적절한 지표 적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역 담당 연구진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가능한 동일 시·도 내 참여 기초지자체는 모형별로 동일한 지표로 측정
  - 시·도가 참여 기초지자체간 지표 선정 조율 필요
- 선택지표의 측정 결과는 공통지표와 달리 엑셀 형태로 대상자별 측정값을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 모니터링 결과로서 통계값이 보고되어야 함

〈표 4-1〉 선택모형별 권고 지표

지표	측정시점	모형			
		발굴	안부확인	생활지원	심리정서 지원
신뢰	사전-사후	V	V	V	V
서비스 만족도	사후		V	V	V
도움요청역량	사전-사후	V	V	V	V
문제해결정도	사후		V	V	V
문제예방정도	(상시 관리)	V	V	V	V
우울	사전-사후		V	V	V

# 3

## 행정사항 및 기타



### ■ 사업 운영

- (사업계획서)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24년 시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시·도는 소관 시군구 자료를 취합·검토, 시·도 부분을 추가 작성하여 사업시작일 두 번째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 (기존 참여 지자체) 1.25(목)
  - (신규 참여 지자체) 7.10(수)
- (중간보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6월말 기준 사업 추진사항을 시·도 보고, 시·도는 소관 시군구 보고자료를 취합·검토하여 보건복지부 보고
  - \* 기존 참여 지자체만 해당. 관련 서식 별도 송부(7월 중)
- (최종보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운영실적 및 보조금 정산 내역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시·도 보고, 시·도는 소관 시군구 보고자료를 취합·검토, 시·도 부분을 추가 작성하여 사업종료 다음달 두 번째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로 보고
  - \* 관련 서식 별도 송부(12월 중)
- (변경보고)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보고

### ■ 교육 및 홍보

- 시범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분야 지식을 습득하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교육과정 안내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대상	교육과정명	교과목	비고	
통합사 례관리 사	기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 개념과 과정 이해</li> <li>▶ 사례관리 실천과정(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제공 등)</li> <li>▶ 현장가이드라인 공유</li> <li>▶ 사례관리자의 윤리와 책임</li> <li>▶ 사례관리자의 위기대응과 안전관리</li> </ul>	연계 과정	
	심화과 정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독의 오해와 진실</li> <li>▶ 물질중독/ 행위중독 이슈가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단기개입</li> <li>▶ 자원연계와 파트너십</li> <li>▶ 사례적용 실습</li> </ul>
		정신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장애의 오해와 진실</li> <li>▶ 조현병이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에 대한 개입</li> <li>▶ 자원연계와 파트너십</li> <li>▶ 사례적용 실습</li> </ul>
		고립/ 저장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과 저장장애에 대한 이해</li> <li>▶ 공공영역에서의 저장장애 접근</li> <li>▶ 중장년/노년 고립사례 슈퍼비전 및 사례 공유</li> </ul>
		자살위 기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문제로서의 자살에 대한 이해</li> <li>▶ 자살예방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 요령</li> <li>▶ 자살위기가구 사례관리</li> </ul>

\*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연계과정: 기본과정 → 심화과정 순으로 이수

\* 위 과정은 '23년 기준으로, '24년 교육계획 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교육대상	교육과정명	교과목	비고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자	전산교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활용	
	case-study	▶ 사례 심층 분석 및 공유	
	사례 공유 세미나	▶ 현장 사례 분석 및 교육	
	소진예방교육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통합사례관리자	찾아가는 심리정서 지원 사업	▶ 심리 회복 및 위기상담 대응 능력 향상	

\* 위 과정은 '23년 기준으로, '24년 교육계획 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

●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홍보를 수행하고 관련 홍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사업 추진 노력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자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

● 대상자 발굴 (공통사업) 등

- (기본 원칙)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함
- (위험자 기준 마련) 개별 지자체에서 1인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위험자 발굴 방법) 1인가구 전수조사, 전입신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발굴 등 다양한 발굴 채널을 활용하여 발굴·관리
- (고독사 의심 사례 보고) 고독사 의심 사례 발생 시, 시군구는 보고 양식\*에 따라 신속히 시·도 및 보건복지부로 보고

\* 고독사 의심 사례 보고를 위한 양식 추후 송부 예정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설계 및 지원
  - \* 가능하면 생애주기(청년, 중년, 노년)를 고려하여 대상자 발굴
- (성과지표 등)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전·후 변화되는 대상자의 건강, 삶의 질,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 참여자 수, 방문 건수, 홍보 횟수 외에도 사업 참여 후 대상자 만족도, 우울증 척도 개선, 사회적 고립도(또는 고립감) 개선 등 포함 노력

\* 추후 컨설팅·평가 과정에서 기 제출한 지자체별 성과지표 등 수정 요청 예정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충실히 협조
-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유사·중복 서비스\* 추가 제공은 지양하고, 기존 서비스 연계
  - \* 국가(전국) 단위로 제공되며, 대상자 상태가 정기적으로 체크 되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
  - \*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장년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청년마음건강 특화사업 등
- 수행기관과 준수사항 협약
  - 필요 시, 시범사업의 목적달성 및 사업 관리감독 등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 등 체결 가능

## ■ 포상 등

- (장관표창)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우수기관 및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유공자 추천 및 공적심사를 통해 선발(매년 9월경)
- (성과공유회) 시범사업 우수기관의 우수사례를 발표 및 공유로 전국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연 1~2회)
- (지역복지사업 평가) 시범사업 성과지표 측정 협조 및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실적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시군구)’ 평가지표에 반영 고려



# VI

chapter

## 참고자료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3단비교)
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 1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 정 2020. 3.31. 법률 제17172호                      일부개정 2023. 6.13. 법률 제19443호                      일부개정 2023. 9.14. 법률 제19716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lt;개정 2023. 6. 13.&gt;</p> <p><b>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b>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정 2021. 3.30. 대통령령 제31579호</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정 2021. 4. 1. 보건복지부령 제272호</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b>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b>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b></p> <p><b>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b></p>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li> <li>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li> <li>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li> <li>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li>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li> <li>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li> <li>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li> </ol>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p> <p>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p> <p>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b>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p>	<p><b>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b>제3조(전년도 추진실적 평가)</b>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b>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b>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b>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b>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p>	<p>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23. 9. 14.&gt;</p>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시행일: 2024. 3. 15.] 제9조</p> <p><b>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b></p> <p><b>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p>	<p><b>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b>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li> <li>2. 조사 대상자의 주거·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li> <li>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li> <li>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p> <p>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p>	<p><b>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p> <p>② 고독사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li> <li>2. 설문조사</li> <li>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li> </ol>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b>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등)</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b>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p><b>제6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b>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b>제2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b>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 계획서</li> <li>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의 수행 계획서</li> <li>3.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li> <li>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li> <li>5. 고독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p> <p>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p> <p>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정보</p> <p>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p> <p>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p> <p>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p>		<p>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p> <p>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 <p>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p> <p>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⑧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3. 9. 14.] [시행일: 2024. 3. 15.] 제12조의2</p>		
<p><b>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b>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b>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p> <p>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p> <p>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b>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b>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p>	<p><b>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기능)</b>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고독사예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b>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b>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b> 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 &lt;개정 2023. 9.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신설 2023. 9. 14.&gt;</p> <p>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lt;신설 2023. 9. 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li> <li>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li> <li>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3. 9. 14.&gt;</p> <p>[시행일: 2024. 3. 15.] 제14조</p>	<p>② 고독사예방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고독사예방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li> <li>2. 시·도지사</li> <li>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li> </ol> <p>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p>⑤ 위원장은 고독사예방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⑥ 고독사예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li> <li>2.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조정 관련 사항</li> <li>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li> </ol>	<p>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li> <li>2.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li> </ol> <p>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b>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p> <p><b>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li> <li>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li> <li>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li> </ol>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⑦ 고독사예방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독사예방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p> <p><b>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b>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li> <li>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li> <li>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li> <li>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li> <li>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li> </ol>	<p><b>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li> <li>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li> <li>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li> <li>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li> <li>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li> <li>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li> </ol>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보칙</b></p> <p><b>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19조(비용의 지원 등)</b>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b>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벌칙</b></p> <p><b>제21조(벌칙)</b>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그럼의 개발·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부칙</b> &lt;제17172호, 2020. 3. 31.&gt;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19443호, 2023. 6. 13.&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31579호, 2021. 3. 30.&gt;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칙</b> &lt;제272호, 2021. 4. 1.&gt;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2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알림 ⇒ 보도자료 ⇒ 제목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23.5.18)의 첨부파일 참고